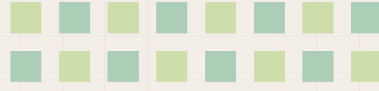


Deloitte.



2024.08 | 제7호

기업지배기구 *Insights*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기구 관련 이슈를 분석하고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기업지배기구 *Insights*를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I. 전문가 기고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와 시사점 • 4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유승원 교수
- ②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에 관한 실무상 쟁점 • 10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정애 교수
-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 • 14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udit&Assurance 부문 오정훈 파트너

II. CCG 아젠다

- ①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 22
-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 30

III. 데이터 포인트

- ① KOSPI 200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42

IV. 주요 규제 동향

- ①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 51
- ②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 58

V. FAQ

- ①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 64
- ② 감사위원회의 내부신고제도 감독 • 68

VI. 주요행사

- ①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 70

목차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본 센터의 다양한 발간물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I. 전문가 기고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와 시사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유승원 교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01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고, 2003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항구적으로 법제화되어 외부감사인인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해왔으나, 형식적 운영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8년 개정된 신외감법에 따라 재무제표 작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목적으로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증수준이 '감사'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경영진의 미흡한 운영과 준비시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운영지원을 위해 기업 내부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담부서 설치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평가에 대한 과거 20여 년간의 국내 연구결과를 내부회계담당인력의 구성 및 운영,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 감사위원회의 역할, 그리고 외부감사인의 역할로 구분하여 요약하고, 향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관련한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¹⁾

1. 내부회계 관리·운영 인력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은 내부회계관리 규정, 인력의 특성, 경력, 전문성이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과 외부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을 높이고, 외부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내부회계관리 인력의 전문성과 경력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목받았다.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 비율이 높거나 내부회계 담당 인력의 평균 경력이 길수록 해당 기업의 회계정보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공인회계사의 비율이 높은 기업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감사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여부와 같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확보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설계와 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가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투자 수준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의 품질이 향상되며, 이는 기업의 정보비대칭성을 감소시키고, 감사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되었다. 특정 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 인력 구조가 강화됨에 따라 회계 투명성이 개선된 사례로 수주산업에서 2016년 이후 내부회계관리 인력 구조가 강화되면서 회계 투명성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1) 본 기고의 내용은 저자의 논문("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 동향: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를 중심으로," 심상훈, 김선미, 유승원 공저, 회계저널, 2001년 12월)을 기초로 준비되었다. 본 기고의 내용은 많은 논문의 결과 보고를 포함하고 있고, 개별논문의 구체적인 reference는 위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어 가독성을 위해 개별 논문의 reference는 생략한다.

I. 전문가 기고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와 시사점

다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적자원 투자가 경영자의 보상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회계 및 자금부서의 내부회계 담당인력 수와 경력,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여부,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의 양적 투자수준이 많을수록 경영자 보상에서 회계성과의 중요성이 높이고 경영자 보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경영자의 수탁책임 목적의 일환으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운영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외부감사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규모가 커질수록 외부감사와의 협력 관계가 개선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담당 인원수가 많고, 공인회계사 인원이 많은 경우, 경영자와 감사인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줄어들며, 이는 감사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투자와 감사시간 간의 음(-)의 관계를 발견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및 운영 담당자의 인력 현황이 감사 시간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담당 인력의 규모, 평균 경력, 공인회계사 여부와 같은 특성들이 회사채 발행비용 및 주관회사 수수료를 낮춘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기업의 재무성과와 직결된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들은 이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이 기업의 재무보고 신뢰성, 외부감사와의 관계, 경영자 보상체계, 그리고 회사채 발행비용 등 다양한 요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와 적절한 인적자원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재무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대표자(내부회계관리자)

2003년 외감법 개정 이후 내부회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신외감법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의 세부 항목으로 측정된 제도 운영 수준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내부회계관리자의 적격성 및 경영진의 책임 강화가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환되었다.

I. 전문가 기고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와 시사점

예를 들어, 경영자의 능력과 내부통제 품질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경영자의 능력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보고되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자의 등기이사 여부가 재무보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등기이사인 경우 회계 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더불어, 내부회계관리자의 이해관계와 독립성이 회계보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부회계관리자가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거나 내부회계관리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때 보수적 회계처리가 촉진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즉, 주주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내부회계관리자는 스스로 내부회계시스템의 감독을 강화할 유인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자 및 대표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감사(위원회)

이사회는 경영진이 설계하고 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는 반면, 감사(위원회)는 그 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의 자발적 설치와 독립성, 전문성, 활동성이 재무보고의 질과 외부감사인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분석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기업들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경제적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결과가 있다. 즉, 감사위원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있을수록 회계부정 가능성이 줄어들며, 이는 회계투명성 증진에 기여한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활동성과 독립성이 높을수록 재무보고의 질이 개선되고, 감사보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도 제시되었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불어 최근에는 감사위원회의 특성이 재무보고의 질뿐만 아니라 이익조정과 같은 구체적인 회계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상근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이 재량적 발생액과 실질활동이익조정을 낮춘다는 결과가 발견되었다.

I. 전문가 기고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와 시사점

뿐만 아니라 감사위원회 특성이 회계정보의 질과 자본시장에서의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감사위원회의 도입과 전문성, 독립성은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감사위원회의 특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적자원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감사위원회의 활동성과 전문성이 높을수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원수가 증가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기업의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활동성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재무보고의 질 향상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함을 시사하고 있다.

4. 외부감사인 검토·감사

신외감법하에서 재무제표 작성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수준이 상향되었다. 이는 단순한 검토가 아닌, 재무보고 과정 전반에 대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요구하며,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법인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2023년까지 모든 상장법인에 확대될 예정이다.

<그림 1>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일정 ^{2),3)}

자산 규모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조원 이상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 ~2조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5천억원	검토	감사 의무화									
		계도 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검토										

2) 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07.12

3) 금융위원회,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2022.12.05

I. 전문가 기고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와 시사점

<그림 2> 연결 재무제표 기준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일정 ⁴⁾⁵⁾

자산 규모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2조원 이상	검토	감사의무화										
		계도위주	본격 감리									
5천억원 ~2조원	검토							감사의무화				
								계도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5천억원	검토								감사의무화			
									계도위주	본격 감리		
1천억원 미만	검토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수준 상향에 따른 영향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은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고, 정보위험과 주식수익률 변동성이 높아지며, 이익의 질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이 재무정보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이익유연화 유인을 높게 가지며, 발생액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취약점 공시 이전에 내부자 매도 거래가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은 감사위험이 높아져 감사시간과 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너경영 기업보다 전문경영 기업에서, 그리고 이사회 규모가 큰 기업에서 취약점이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 이후, 기업들은 내부회계담당인력의 비율이 증가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개선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내부회계담당인력을 보완하는 경향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은 재무보고의 질과 기업의 내부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감사위원회와 같은 내부통제기구의 역할이 강조된다.

4) 금융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1.07.12
 5) 금융위원회,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 2023.06

I. 전문가 기고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와 시사점

5. 시사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내부회계담당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회계정보의 질이 개선되고 감사품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독립성, 활동성은 경영진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제약하고,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알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법규 준수와 재무보고의 신뢰성 강화 등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특히, 외감법 개정 이후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이 증가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실태를 감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주로 사외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의 일상적 경영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실무를 직접 처리하는 데도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 조직이 필수적이라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해 2018년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하여,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조직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조치는 실효성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로 볼 수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재무보고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콘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I. 전문가 기고 ②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에 관한 실무상 쟁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정애 교수

1.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의 의의

주주가 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자 하면 먼저 회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상법상 주주에게 열람·등사권이 인정되는 것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제396조 제3항), 이사회 의사록(제391조의3 제3항),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제448조 제2항), 회계장부(제466조 제1항) 등이 있다. 대부분은 단독주주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하지만, 회계장부의 경우는 소수주주권이고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미리 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도 있다. 즉 회계장부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법은 다른 자료와 달리 당사자 적격에 제한을 두고 이유를 붙인 서면을 미리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회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최신 판례의 동향(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70163 판결)

소수주주인 원고는 피고 회사가 2015. 2. 2. 학원사업을 분할 매각한 이후 2016년부터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감사보고서 등의 기재만을 보더라도 과도한 비용 지출이 의심되거나 그 밖에 피고 회사의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인정되고, 특히 피고 회사 및 그 사내이사 겸 지배주주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등 경영 실태와 경영진의 법령 또는 정관 위반 여부 파악, 이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하여 상법 제466조 제1항에 따라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한 것이다.

상법 제466조 제1항은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중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주주가 상법상 인정되는 이사해임청구권(제385조),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제402조), 대표소송권(제403조) 등 각종 권한을 행사하려면 회사의 업무나 재산상태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법 제448조에 따라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재무제표의 열람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주주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회계장부와 회계서류까지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I. 전문가 기고 ②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에 관한 실무상 쟁점

상법 제466조 제1항은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 이유는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것이 회사의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가 신중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나 열람·등사 대상인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손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주주가 제출하는 열람·등사청구서에 붙인 '이유'는 회사가 열람·등사에 응할 의무의 존부를 판단하거나 열람·등사에 제공할 회계장부와 서류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사의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면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하거나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이와 달리 주주가 열람·등사청구서에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게 할 정도로 기재해야 한다면,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주에게 과중한 부담을 줌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크게 제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상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당하다. 다만 이유 기재 자체로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목적이 부당함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적법하게 이유를 붙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열람·등사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또 이른바 모색적 증거 수집을 위한 열람·등사청구도 허용될 수 없으나, 열람·등사청구권이 기본적으로 회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 획득과 자료 수집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모색적 증거 수집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한편 주주로부터 열람·등사청구를 받은 회사는 상법 제466조 제2항에 따라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이를테면 열람·등사청구가 허위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든가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든가 하는 사정을 주장·증명함으로써 열람·등사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I. 전문가 기고 ②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에 관한 실무상 쟁점

3. 회계장부 열람·등사권의 청구상 쟁점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중 3% 이상(제466조 제1항), 상장회사의 경우 6월간 보유를 조건으로 하여 자본금 총액 1,000억원 미만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0.1% 이상, 그 이상인 회사는 0.05% 이상(제542조의6 제4항)을 보유하는 자이다. 또한 열람과 등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청구한 주주가 전 기간을 통해 위와 같은 주식 보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회계장부의 열람·등사를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위 주식 보유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52037 판결).

한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의 행사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장부나 서류철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상법 제466조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열람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장소라고 하여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2917 판결).

또한 법원은 회사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이러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은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0. 10. 20. 2020마6195 결정).

4. 회사가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주주의 알 권리를 위해 인정되는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이지만, 이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중요한 기밀 정보가 유출되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는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I. 전문가 기고 ②

회계장부의 열람·등사권에 관한 실무상 쟁점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004. 12. 24. 선고 2003마1575).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도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주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주주가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다270916 판결).

또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어야 하는데(갑 주식회사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할 의도로 갑 회사 주식을 대량 매집하여 지분율을 끌어올려 온 을 외국법인이 갑 회사가 체결한 파생상품계약 등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면서 갑 회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 주주가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통한 책임추궁이나 유지청구, 해임청구를 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등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는 회사의 경영을 감독하여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하는 주주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1.자 2013마657 결정).

최근 판례의 태도를 보면 법원은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 행사에 관해 예전과 달리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경우 그 청구의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마련하는 경영적·법적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콘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I. 전문가 기고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udit&Assurance 부문 오정훈 파트너

서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주, 투자자, 규제 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문서이며, 기업의 지배구조, 즉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 내부 통제 시스템, 이사회 구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보고서입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에 대한 준수여부를 공개하여 해당 기업의 개괄적인 지배구조 현황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이 올해부터 (연결)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되면서 평균 준수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공시대상이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평균 준수율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들, 나아가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핵심지표 준수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사항¹⁾

주주

-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 ② 전자투표 실시
-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 ④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 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

- ⑥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 ⑦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 ⑧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 ⑨ 집중투표제 채택
- ⑩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 ⑪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감사기구

-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 한국거래소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지표 15개를 선정하였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준수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I. 전문가 기고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현황

대체로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법인의 자산규모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은 비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산 2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A집단)'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2.9%,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C집단)'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35.8%로 두 집단간 27.1%p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집단별 평균 준수율의 GAP을 극복하기 위하여 A집단과 C집단간 준수율의 차이가 큰 상위 6개 원칙(원칙 1/5/6/10/11/14)에 대하여 A집단을 벤치마크로 C집단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례로, C집단이 상기 언급된 6개 원칙(원칙 1/5/6/10/11/14)의 준수율을 전체 집단(A+B+C집단)의 6개 원칙별 평균 준수율 수준으로 높이는 노력을 할 경우 C집단의 평균 준수율은 40%를 상회하게 되며 B집단(자산총액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평균 준수율과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C집단 및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대상이 되는 상장법인의 6개 원칙에 대한 평균 준수율 개선 방안은 다음 섹션에 정리해 놓았으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2), 3), 4)

구분	전체	자산 2조원 이상 (A집단)	자산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B집단)	자산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C집단)	GAP (A집단 - C집단)
원칙 1	29.4%	45.3%	19.2%	14.5%	30.8%
원칙 2	78.4%	86.3%	77.5%	66.9%	19.4%
원칙 3	67.1%	77.4%	66.7%	51.7%	25.7%
원칙 4	16.6%	23.1%	14.2%	9.0%	14.1%
원칙 5	41.7%	64.2%	27.5%	20.0%	44.2%
원칙 6	31.7%	51.9%	20.8%	11.0%	40.9%
원칙 7	74.4%	88.2%	68.3%	59.3%	28.9%
원칙 8	13.0%	20.8%	9.2%	4.8%	15.9%
원칙 9	2.9%	4.7%	0.8%	2.1%	2.6%
원칙 10	56.0%	76.4%	44.2%	35.2%	41.2%
원칙 11	50.1%	78.8%	27.5%	26.9%	51.9%
원칙 12	45.5%	47.2%	42.5%	45.5%	1.7%
원칙 13	87.2%	97.6%	85.0%	73.8%	23.8%
원칙 14	54.9%	82.5%	43.3%	23.4%	59.1%
원칙 15	96.9%	99.1%	97.5%	92.4%	6.7%
전체	49.7%	62.9%	42.9%	35.8%	27.1%
대상 회사 수	477	212	120	145	-

2) 한국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3호, 2024.07

3) 총 조사대상 회사: FY2023 기준 유가증권시장 일반상장법인 연결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477개사

4)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사이트를 참고함 (<https://kind.krx.co.kr/corpgeneral/companyGovernance.do?method=loadInitPage>)

I. 전문가 기고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

• 원칙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4주 전에 실시하기 위해서는 연간 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가 주주총회 준비에 필요한 작업을 미리 마무리하는 것뿐 아니라, 이사회 일정을 앞당겨 주주총회 안건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갖추어야 할 주요 자료를 미리 작성하여 소집공고와 함께 주주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필요한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주주총회 소집 공고서: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목적, 의결사항 등을 명확히 명시한 문서로, 주주총회의 의안(agenda) 목록과 의결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② 의안 설명서: 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각 의안의 배경, 목적,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의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③ 위임장: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의결권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 서류로 위임 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포함합니다. 위임장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합니다.
- ④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회사의 지난 회계연도의 주요 경영 실적과 활동을 보고하는 문서로 주주들이 회사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주주총회 4주 전에 공시하기 어려우므로, 주주총회 1주 전에 공시할 예정이라고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⑤ 이사 및 감사 선임 자료: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이사 및 감사 후보자의 경력, 자격, 주요 경력 및 이사회 내 역할 등을 설명한 자료로 후보자의 독립성과 적격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됩니다.
- ⑥ 배당 관련 자료: 배당금 지급 계획, 배당 성향, 배당 정책 등에 대한 자료로 주주들이 배당금 지급에 대해 이해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I. 전문가 기고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 원칙5: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 신뢰를 강화합니다. 또한, 주주의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여 주주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 주가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주주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기업이 갖추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배당정책 설명서: 회사의 배당 철학, 원칙, 배당금 지급 기준, 목표 배당성향, 배당금 결정 절차 등을 포함하며, 주주들이 회사의 배당정책을 명확히 이해하고, 배당금 지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배당 지급 일정: 배당금 지급일, 기준일(Record Date), 배당 확정일 등 배당금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며, 주주들이 배당금 지급 일정을 사전에 인지하고, 필요한 행정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③ 과거 배당금 지급 내역: 최근 몇 년간의 배당금 지급액, 배당률, 배당성향 등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주주들이 회사의 배당 역사와 일관성을 이해하고, 배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주요 자료는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전자 공시 시스템을 통해 배당정책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고, 변경 사항을 신속히 알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원칙6: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조직의 리더십 연속성을 유지하고,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며, 내부 인재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직원의 동기 부여와 유지율을 높입니다. 또한 투명한 절차로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고, 법적 및 규제 요건 준수를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에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 경영승계 절차의 개시 사유 및 개시결정 시기, 후보자 추천 절차 및 경영승계 절차, 최고경영자 후보군 선발 및 육성프로그램 등 관리방법, 최고경영자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이 준비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직의 전략적 목표 및 비전 수립: 조직의 장기 비전과 전략적 목표를 문서화하고, 핵심 가치와 문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 ② 이사회 및 승계위원회 구성: 이사회 내 위원회인 승계위원회 구성 및 역할 정의하고, 이사회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원활하게 승계정책을 운영해야 합니다.

I. 전문가 기고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 ③ 후보자 선정 기준 및 평가 시스템 구축: CEO 후보자의 자격 요건 및 역량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 및 방법론을 설정합니다. 후보자 평가를 위한 성과 지표와 역량 매트릭스 마련하여 후보자 선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 ④ 내부 인재 풀 분석 및 개발: 내부 인재의 경력, 성과, 리더십 역량 등을 평가하고, 내부 후보자들을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합니다. 또한 멘토링 및 코칭 프로그램 운영하여 내부 인재 풀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합니다.
- ⑤ 외부 인재 탐색: 외부 인재 탐색 및 평가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헤드헌팅, 네트워킹 등), 외부 후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최고경영자에 적합한 후보군을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⑥ 비상 승계 계획 수립: 긴급 상황에 대비한 임시 CEO 또는 대행 체제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상황 시의 의사소통 계획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⑦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승계 후보자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정기적인 리더십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하여 후보자들의 역량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원칙10: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는 정책은 경영진 및 고위 임원의 선임 절차에서 철저한 배경 조사와 평판 조사를 통해 적격성을 검토하고, 기업의 가치를 보호하며 주주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기업의 신뢰성과 명성을 강화할 수 있으며, 주주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경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투명한 선임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여 조직의 신뢰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후보자 자격 기준 설정: 후보자의 과거 성과와 평판을 철저히 검토하여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없는지 확인하고, 법적 문제, 규제 위반, 윤리적 문제 등과 관련된 후보자의 기록을 검토하여 후보자 자격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② 평판 조회 및 배경 조사: 후보자의 과거 직장, 동료, 업계 전문가 등을 통해 평판 조회, 금융 및 법률 전문가를 통해 후보자의 배경 조사(법적 문제, 금융 상황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I. 전문가 기고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 ③ 평가 및 검증 절차: 후보자를 평가하기 위한 다단계 절차 마련(예: 서류 검토, 면접, 심층 인터뷰 등)하고, 후보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영 철학, 가치관, 과거 행동 패턴 등의 검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④ 지속적 모니터링: 선임된 경영진의 지속적인 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경영진의 행동이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 원칙11: 이사회 구성원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이사회 구성원 중 여성 비율이 늘어나면, 다양한 배경과 경험이 반영되어 더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성 이사가 많은 기업이 더 나은 재무 성과와 주주 가치를 창출하며, 여성 리더십 스타일은 협력적이고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⁵⁾ 성별 다양성을 중시하는 기업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여 고객과 투자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우수한 여성 인재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기업이 임원후보 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다양성 정책 수립: 이사회 내 여성 비율 목표를 명시한 공식적인 다양성 정책을 수립하고, 다양성 정책과 목표를 공개하여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성을 제공합니다.
- ② 후보자 발굴 및 모집: 여성 후보자 풀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인 발굴 노력을 기울이고, 여성 인재들이 이사회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회와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③ 선임 절차 개선: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선임 기준을 마련하고, 이사회 후보자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 ④ 여성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여성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 인재들의 경력 개발을 지원하여 이사회 후보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5) 딜로이트 글로벌, 「Women in the boardroom: A global perspective」, 제8판, 2024.03

I. 전문가 기고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 원칙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회계감사실무지침 2018-2)에서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커뮤니케이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감사계약 단계: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업무수행 이사의 신원 정보와 해당 역할을 포함합니다.
- ② 감사계획 단계: 커뮤니케이션의 형태, 시기 및 예상되는 일반적 내용과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의 개요, 부정 위험과 관련하여 지배기구가 수행하는 감시 기능의 이해,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질의 및 그룹재무제표 감사 계획을 포함합니다.
- ③ 감사수행 단계: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경영진이 연루된 부정 등 부정 관련 사항,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법규 위반,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식별된 사건 또는 상황, 그룹재무제표 감사에서 발견된 유의적인 사항, 감사기준서 701이 적용되는 경우, 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이라고 결정한 사항들 또는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④ 감사종료 단계: 독립성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진술, 재무제표일 이후 후속사건, 경영진에게 요청한 서면진술, 미수정왜곡표시, 감사의견을 변형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문단이나 기타사항문단을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감사보고서에 업무수행이사의 이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의 수정이 필요하나 경영진이 그러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감사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향상되고,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어 잠재적 문제를 조기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의 효과성을 개선하여 재무보고의 정확성을 높이고, 법규 준수 상황을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합니다. 이는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I. 전문가 기고 ③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방안(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결언: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

현대의 비즈니스 환경은 급격한 변화와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규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사회는 기업이 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해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를 개선하여 재무 보고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이는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신뢰를 제공하며,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은 시장에서의 기업 신뢰를 높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배구조의 개선은 규제 준수와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강화된 규제와 글로벌 표준에 맞춰 기업의 내부 통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점검함으로써,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법적 제재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지배구조의 개선은 필수적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관련 문제는 이제 기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자리잡았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배구조가 필요합니다. ESG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실현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전문가 기고' 섹션의 콘텐츠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며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관련 사안의 의사결정 필요 시 반드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II. CCG 아젠다 ①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¹⁾

요약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공시는 전통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공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 가지 특징이 대두되고 있음
- 공시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CEO와 CFO가 감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이 요구되는 SEC의 요구 공시사항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임. 더불어, 적절하게 실행되는 공시통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함임
- 공시위원회 재구성 시 고려사항으로는 공식적인 공시위원회 헌장 유지 및 개정, 공시위원회 위원(장) 재평가 및 위원회 운영 절차 강화 등을 포함함
- 감사위원회는 체크리스트의 활용을 통해 공시위원회가 변화하는 공시 환경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음

2024년 1월에 발간된 '2024년 감사위원회 안건 전망²⁾'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정보 공시는 감사위원회의 중요한 아젠다이다. 해당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 공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사위원회에게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다.

정보공시는 전통적으로 감사위원회가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며, 최근 딜로이트 글로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 가지 차별화된 요소가 확인된다.

<표 1> 공시 환경의 진화에 따른 세가지 특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 당국이 신규 공시를 채택하거나 제안하는 빈도 및 속도 •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정보를 포함하는 공시 범위의 확대와 이러한 공시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회계처리 방법 • 자발적 공시의 확산과 이를 경쟁력으로 활용하는 기업, 산업 중심의 비표준화 및 비규제화된 보고양식

많은 기대를 모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투자자를 위한 기후 관련 공시의 강화 및 표준화'(이하 '기후 공시 규칙') 발표는 향후 공시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최근의 규제 사항이다(이 규칙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담긴 딜로이트 글로벌의 헤즈업(Heads Up) 발간물³⁾ 참조). 많은 기업이 SEC의 기후 공시 규칙에 따라 새로운 '공시 통제 및 관련 절차(disclosure controls and procedures·DCP)'가 요구되고 공시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1) 딜로이트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audit committee's agenda - Aligning the disclosure committee in the era of disclosure」, 2024.05

2)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4년 감사위원회 안건 전망」, 2024.01

3) 딜로이트 글로벌,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EC's Landmark Climate Disclosure Rule」, 2024.03.15

II. CCG 아젠다 ①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그러나 기후 공시 규칙만이 기업들이 겪고 있는 규제 변화는 아니다. 기업들은 사이버보안, 임원 성과보수 환수(clawback), 내부자 거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인적 자본 및 이사회 다양성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시행하고, 규칙 제안에 대비하고 있다. 동시에 기업들은 강화된 법 집행 환경에도 적응하고 있다.

대규모 신규 또는 개정 공시의 양과 보고되는 기타 유형의 정보, 그리고 적용과정에서 SEC가 집행에 집중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환경에서 감독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공시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고 교체가 필요한 시점인지 파악해야 한다. 현재 공시위원회가 없는 기업은 이를 계기로 해당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공시위원회가 진화하는 공시 환경에 따라 현장 개정, 구성원 교체, 위원회 절차 등 선도적인 관행과 운영 개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표 2>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칙 관련 자료

구분	내용
딜로이트 글로벌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후 공시 ⁴⁾ 사이버보안 ⁵⁾ 임원 성과보수 환수 ⁶⁾ 기업인수목적회사(SPACs) ⁷⁾
감사위원회/공시위원회 참고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딜로이트 글로벌 감사위원회 가이드 ⁸⁾ 딜로이트 글로벌 감사위원회 현장 예시 ⁹⁾ SEC 공시위원회 현장 예시 ¹⁰⁾

4) 딜로이트 글로벌,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EC's Landmark Climate Disclosure Rule」, 2024.03.15

5) 딜로이트 글로벌, 「SEC Issues New Requirements for Cybersecurity Disclosures」, 2023.07.30

6) 딜로이트 글로벌, 「SEC Adopts Final Rule on "Clawback" Policies」, 2022.11.14

7) 딜로이트 글로벌, 「SEC Issues Final Rule Related to SPACs, shell Companies, and Projections」, 2024.02.06

8) 딜로이트 글로벌, 「Audit Committee Guide」

9)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Sample audit committee charter」, 2022

10) SEC, 공시위원회 규정(Disclosure Committee Charter), Exhibit 99.3

II. CCG 아젠다 ①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공시위원회란?

SEC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Sarbanes-Oxley(SOX) 법 제302조에 따른 SEC 규정이 채택되면서 2002년부터 공시위원회 설치가 급속히 보편화되었다. 이 조항과 SEC 규정에 따라 CEO와 CFO는 SEC 공시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적절한 공시 통제가 구축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법적 규제 환경에서, 공시위원회는 많은 기업 내 공시 통제의 한 축으로 설치 및 운영되어 왔다. 증권거래법 제302조에 따른 증권거래법 규정 13a-15에 첨부된 해설에서 SEC는 '정보의 중요성 고려 및 공시 의무결정'을 담당하는 임원급 위원회를 설립하고 '발행인의 공시 통제 및 관련 절차의 설계, 수립, 유지, 검토 및 평가에 대한 명시적 책임을 지는 CEO 및 CFO에게 해당 임원급 위원회가 보고하도록 권고했다.

공시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CEO와 CFO가 감사위원회의 검토 및 승인이 요구되는 SEC의 요구 공시사항들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더불어, 적절하게 실행되는 공시통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요컨대 공시위원회는 회사 제출 서류의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및 공정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시위원회는 공개적으로 공표되는 모든 정보에서 공시의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공시의 적절성을 결정할 수 있다.

<표 3> 공시위원회의 설치 목적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C 제출 서류 초안을 검토하고, 수정을 권고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제출 전에 수정사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 • 재무보고 내부통제(ICFR)¹¹⁾와 관련하여 무결성과 완전성 제공 • SOX법 제302조, 제404조 및 제906조의 준수 여부 인증 지원

경영진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공시되는 항목에 대한 '공시 통제 및 관련 절차'는 물론 ICFR의 수준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ICFR의 효과를 평가할 책임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책임이 있다.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수립한 프로세스와 통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세스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시위원회는 CEO와 CFO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무 공시 또는 자발적 공시가 요구되는 항목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시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어 더 광범위한 공시를 감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리스크 관리 및 새로 개발된 지속가능성 관리 위원회와 같이 다양한 보고서 발간을 주도하는 타 관리 위원회와의 조정이 포함될 수 있다.

11) ICFR(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이에 준함

II. CCG 아젠다 ①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공시위원회 재구성시 고려사항

공시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공식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환기에 공시위원회가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1. 공식적인 공시위원회 현장의 유지 및 개정

공시위원회는 20년 이상 널리 채택된 조직 구성의 관행이지만, 일부 기업은 공식화된 현장이 아닌 회의 자료를 통해 그 존재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SEC는 증권 거래법 규정 13a-15의 채택에 따른 해설에서 공시위원회 현장의 중요성을 제안했고, 이후 예시 현장을 공표하면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표 4> SEC의 공시위원회 예시 현장 항목

구분	내용
위원회의 목적	• 위원회의 사명 선언문
책임	• 공시 통제, 공시 서류 검토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위원회의 권한 범위
공시 통제의 고려사항	• 공시위원회의 통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위원 및 위원장	•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운영 방식
회의 및 절차	• 위원회의 회의 빈도, 회의 방법, 안건 종류 등

감사위원회 실무보고서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감사위원회의 안건에 점점 더 많은 현안이 추가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하기의 두 가지 사례에서 확대된 안건에서의 공시위원회 역할을 강조한다.

- 중요성에 집중하기 - 최근의 집행 조치에서 SEC는 직원과 관련된 중요 정보를 공시하지 않은 한 회사에 3,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¹²⁾ 특히 SEC는 회사가 이 정보를 공시위원회에 제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자발적 공시 -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동종 업계와 속도를 맞추며, 투명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시장 차별화를 위해 자발적 공시를 실시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SEC의 기후 공시 규칙은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던 많은 공시항목들을 포함하지만, 기업은 해당 규칙의 시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발적 공시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최근의 자발적 공시의 내용은 ESG 트렌드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리스크 관리, 운영, 공급업체, 개인정보보호,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가 포함된다.

12)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Activision Blizzard to Pay \$35 Million for Failing to Maintain Disclosure Controls Related to Complaints of Workplace Misconduct and Violating Whistleblower Protection Rule,」, 2023.02.03

II. CCG 아젠다 ①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공시위원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 준수 고려사항을 감안할 때, 공시위원회가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 권한을 확보하는 동시에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는 것이 중요하다. 공시위원회는 현장을 개정할 때(또는 아직 현장이 없는 경우 현장의 초안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 감독 책임을 언급하는 감사위원회 현장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감사위원회 현장 예시 참조¹³⁾).

2. 공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재평가

공시위원회 현장에는 회의, 안건 및 조치 항목을 이끌 위원장의 역할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회 주무부서/담당에는 재무 또는 법무 부서의 인원이 포함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며, 경우에 따라 두 개 이상의 부서/담당에서 위원회를 공동 관리·감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시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구체화되는 추세에 따라 공시위원회는 기타 영역의 전문가(예: 지속가능성, 사이버보안, 기술 및 인재관리 역할의 임원/관리자)도 포함하도록 조직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위원회 재구성의 첫 단계로, 공시위원회의 책임자는 위원회가 담당하는 모든 공시사항의 목록을 작성하고(아래 참조), 현재 위원들이 모든 관련 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공시에 포함되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시위원회의 전문성도 확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공시 환경이 급변하고 신규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공시위원회는 위원회 업무 착수(Onboarding) 절차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신규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기존 위원은 신규 혹은 변경된 위원회 절차 및 필수 공시사항에 대한 정기적인 브리핑을 수령해야 한다.

3. 공시위원회 절차의 강화(특히 위원회 운영 관련)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SEC는 공시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 집행 조치를 취했다. 공시위원회는 이를 향후 공시 조사의 신호로 해석하고 각 안건에 관련 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공시위원회의 검토사항을 문서화하는 데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공시목록

많은 기업이 SEC 필수 제출 서류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공시 보고서(예: 지속가능성, 공급업체 책임,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 인권 등에 대한 주제별 보고서)를 발행한다. 기업 보고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리스크도 증가하고 있다. 기후 공시 규칙은 이전에 SEC 이외의 기관에 보고된 데이터를 SEC 제출 서류에 포함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복잡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

13)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Sample audit committee charter」, 2022

II. CCG 아젠다 ①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공시위원회는 이러한 보고서를 주관하는 다른 위원회(주로 리스크관리 위원회 또는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와 협력하고 회사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여러 공시에서 보고되거나 경영진이 대내외적으로 소통하는 정보 및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조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시위원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더라도, 공시위원회는 회사가 게시하는 공시의 전체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인 보고로 인해 SEC의 집행 조치나 주주들의 소송에 회사를 노출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

최소한 공시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공시 내용도 검토하여 현재 또는 예상되는 SEC 제출자료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시위원회가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우, 의무 및 자발적 공시에 대한 중앙 집중식 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많은 기업에서 SEC의 기후 공시 규칙과 사이버보안 규칙에 따라 새로운 공시 통제 및 관련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공시 목록은 기업이 공시 통제 및 관련 절차의 개선을 위해 미흡사항과 개선 기회를 파악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2) 회의 안건

많은 공시위원회가 분기별, 연도별로 동일한 주제를 검토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감사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시위원회는 특정 공시 또는 통제에 대한 심층 분석, 예정된 또는 예상되는 규제 변경에 대한 계획 등 특정 제출 서류 검토 이외의 주제에 대한 충분한 시간을 회의 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체크리스트

표준화된 체크리스트의 활용은 공시위원회가 특정 회의에서 다루거나 검토해야 하는 공시 및 통제 사항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또한 제출 초안에 대한 검토 기록이 검토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보여주는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된다면 더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4) 문서화

회사가 통제 및 절차에 대해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공시위원회 회의의 문서가 통제 평가의 범위와 품질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입증자료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 및 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공시위원회 절차를 새롭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공시위원장은 법률 자문과 상의하여 회사의 법적 리스크 또는 리스크 성향에 맞는 문서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II. CCG 아젠다 ①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일부 공시위원회는 공식적인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서화 대안이 있다.

<표 5> 문서화 대안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개최를 입증하기 위한 안건 및 개최일자 기록 • 공시위원회 회의 사전에 검토된 재무보고서 초안의 변경사항 기록 • 공시위원회가 검토 범위를 입증하기 위해 활용한 체크리스트 기록 • 감사위원회 회의록에 공시위원회가 보고서를 제공한 사실과 제시된 관련 세부사항 기록

특히 SEC의 기후 공시 규칙 및 사이버보안 규칙과 관련하여 기업이 공시할 내용은 어떤 데이터 및 사건이 중요한지에 대한 각 기업의 평가에 따라 상당 부분이 결정될 것이다. 기업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잠재적 보고 대상 데이터 및 사건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하기 위해 법률 자문과 상의할 수 있다.

결론

규제기관,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의 공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보고되는 데이터의 복잡성, 규제기관의 기대치 및 법적 리스크도 증가할 것이다. 다행히도 이사회는 공시위원회를 통해 조력을 받을 수 있지만, 공시위원회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1차 방어선¹⁴⁾이 되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문

공시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최고경영진 차원의 위원회이다. 감사위원회는 아래의 세 가지 주요 영역에 대한 질문을 통해 공시위원회가 변화하는 공시 환경에 대응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재검토할 수 있다. 일부 감사위원회는 이러한 재정비 업무수행에 긴밀히 관여하고자 할 수 있다.

14) IIA의 3차 방어선 모델(Three Lines of Defense)에 따른 개념으로 1차 방어선은 '리스크 및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부문(현업)'을 의미함

II. CCG 아젠다 ①

정보공시 시대, 공시위원회의 역할

<표 6> 공시위원회 재구성 관련 감사위원회 체크리스트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가? 없다면 설치가 필요한가? • 공시위원회에 헌장이 있는가? 있다면 헌장에 현재 공시위원회가 담당하는 공시의 범위와 세부 수준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는가? • 공시위원회는 모든 공시 데이터를 전문가가 검토할 수 있도록 유관부서의 대표자로 구성되었는가? • 모든 공시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역할과 위원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가? • 공시위원회 안건은 모든 관련 주제를 반영하는가? • 공시위원회는 공시 검토의 품질 및 검토 여부를 효과적으로 문서화하고 있는가? • 공시위원회는 리스크 관리위원회 및 지속가능경영 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하는가?

(2) 기후 공시 규칙: 전사적 노력

SEC 기후 공시 규칙의 이행은 많은 기업의 전사적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SEC 기후 공시 규칙 요약본¹⁵⁾ 참조). 이행 계획을 수립할 때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양질의 투명 공시를 제공하기 위한 이사회 차원의 거버넌스 및 관리 감독 정의
- 재무보고 및 기후 변화 중심 역량을 기업 전사전략과 통합하여 전략적 목표 수립의 효율화 추구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의 정량화
- 보고 기술, 데이터 아키텍처, 기후 변화 관련 정보와 관련한 통제 평가
- 인증 준비
- 기후 변화 및 보고 데이터가 연계되어 품질과 투명성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및 수단의 구현

이러한 고려사항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필요 시 공시위원회는 이러한 광범위한 노력에 대해 기업의 접근 방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5) 딜로이트 글로벌, 「The SEC climate rule is here,」, 2024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요약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이사회는 기업운영의 중심에서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또는 보고 받는 안건의 범위는 해당 범위안에서 다뤄져야 함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이사회 총 안건 수는 8,501건으로 전기대비 163건(2.0%p) 증가하였으며 사업·경영 안건 비중(31.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글로벌 이사회 안건의 경우 특히 기술/사회 트렌드 등이 반영된 시의성 있는 안건(지정학적 격변, 생성형 AI, 사이버보안 등) 사례도 참고할 수 있음을 확인함
- 이사회 회의는 안건 검토, 보고수령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적 협의체로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이사회 연평균 회의 횟수는 11.1회, 다뤄지는 연평균 안건 수는 42.5건임
- FY2023 기준 글로벌 기업 이사회 연 평균 회의 개최 수는 7.6회이며,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등 활발한 위원회 회의활동 추이도 주목할 사안임
- 효율적인 이사회 안건 상정 및 회의 운영을 위한 이사회 의장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조됨

배경

-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해야 함
 - 이사회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된 이사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주요 업무집행 사항을 의결하고 최고경영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기업지배기구이기 때문임
- 이사회 안건은 이사회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접적인 수단이자 이사회 활동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며 이사회 회의는 안건 검토, 보고수령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적 협의체라 할 수 있음
- 이에 이사회 안건의 의의, 국내외 이사회 연평균 안건 동향과 회의 개최 횟수 등의 동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¹⁾

1)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FY2023 KOSPI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안건 공시 정보(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참고함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이사회 안건 의의

- 상법에서는 이사회가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제393조 제1항)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제393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회가,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즉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사외이사제도(상법 제542조의 8)를 통해 보완하고 있음
 - 실무적 관점에서 사내이사는 업무를 집행하고, 사외이사(상법 제382조 제3항)는 사내이사의 업무를 감독하는 역할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음
 - 회사 경영활동에 대한 책임: 이사회 멤버로서 자격을 가지고 경영상 의사결정사항에 참여하거나 최고경영진 및 타 이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감독 책임이 있음
 - 사내이사와 동일한 지위: 이사회 멤버로서 상법상 이사에게 인정된 대부분의 권한과 의무 및 책임이 부여되지만 비상임 이사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내이사와의 비교 시 상대적으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음
-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는 이러한 상법 상의 규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기업운영의 중심으로 기업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다음과 같은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회가 의사결정 또는 보고 받는 안건의 범위는 해당 범위안에서 다뤄져야 함
 - 이사회 안건은 이사회 정관 및 관련규정과 연관되어야 하며 연간 업무계획이 반영된 것이어야 함
 - 안건에는 법제도 동향 또는 기술/사회 트렌드 등이 반영된 시의성 있는 안건도 포함될 수 있음
 - 최고경영자 승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할 것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리스크관리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표 1> 지배구조 모범규준: ② 이사회 리더십 >> 1. 이사회 역할과 책임 >> 1.3 이사회 의사결정 기능과 감독기능

주요 기능	세부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목표와 전략의 설정 • 회계투명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 경영진의 임면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 •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 수준의 결의 • 기타 ESG 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의 • 대규모 자본지출의 결의 • 대규모 차입 및 지급보증의 결의 • 대규모 담보제공 및 대여의 결의 • 중요자산의 처분 및 양도 • 기업 인수합병 관련 주요사항의 결의 • 영업소 설치, 이전 또는 폐지의 결의 • 법령 및 윤리규정 준수의 감독 • 최고경영자 승계 및 후보군의 육성·평가 •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의 감독 • 회계 및 재무보고체계의 감독 • 리스크 관리 및 재무통제의 감독 • 조세 전략·거버넌스 수립 및 세무리스크 관리 • 정보공시의 감독 • 기타 기업지배구조의 유효성 평가 및 개선

- 이사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은 정기적으로 이사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상정할 일반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며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됨
 - 이사회 의장은 안건과 관련한 사항을 대표이사와 협의하여 이사회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권고됨
 -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 선임사외이사 또는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가 대표이사와 협의하는 것이 권고됨
- 이사회 사무국 또는 지원담당조직은 안건과 관한 자료들이 충분한 여유를 두고 이사진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해야 함²⁾

2) 상법 제390조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국내 이사회 안건 비중

□ 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회의 총 안건 수는 8,501건으로 전기대비 163건(2.0%p) 증가하였으며 사업·경영 안건 비중(31.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차순위로 인사(18.4%), 특수관계거래(특수관계자, 주주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 등, 14.8%), 자금(조달/대여, 9.5%) 및 규정·정관(7.2%)의 순으로 나타남

<표 2>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수 및 비중³⁾

구분	안건 건수 및 비중(%)												
	사업·경영		인사		특수관계거래		자금		규정·정관		기타		소계
FY2023	2,671	31.4%	1,563	18.4%	1,260	14.8%	805	9.5%	612	7.2%	1,590	18.7%	8,501 (100%)
FY2022	2,665	32.0%	1,531	18.4%	1,275	15.3%	720	8.6%	518	6.2%	1,629	19.5%	8,338 (100%)

□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 이사회회의 5대 안건에 속하면서 ESG와 관련한 안건은 201건(2.4%)으로 나타나 최근 이사회에서도 총괄적으로 다뤄지는 안건임을 확인함

<표 3> 이사회 안건 주요 항목별 예시⁴⁾

구분	안건 예시
사업·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년(제00기)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00년(제00기) 분기/반기 실적보고 • 000사업을 위한 별도법인 설립 및 출자 승인의 건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선임 승인 •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 운영계획 보고의 건 •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 보고
특수관계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 또는 이해관계자 등과 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공정거래법 상 계열회사와의 대규모 내부거래 및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승인 • 00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총액한도 승인의 건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운용 현황 보고 • 자금조달계획 보고 (담보대출, 담보부사채, 단기사채) • 단기사채 발행 한도 승인(증액)
규정·정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및 위원회 규정 개정의 건 • 00년 주주환원정책 승인의 건 • 내부통제기준 일부 개정안 승인

3,4)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FY2023 KOSPI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안건 공시 정보(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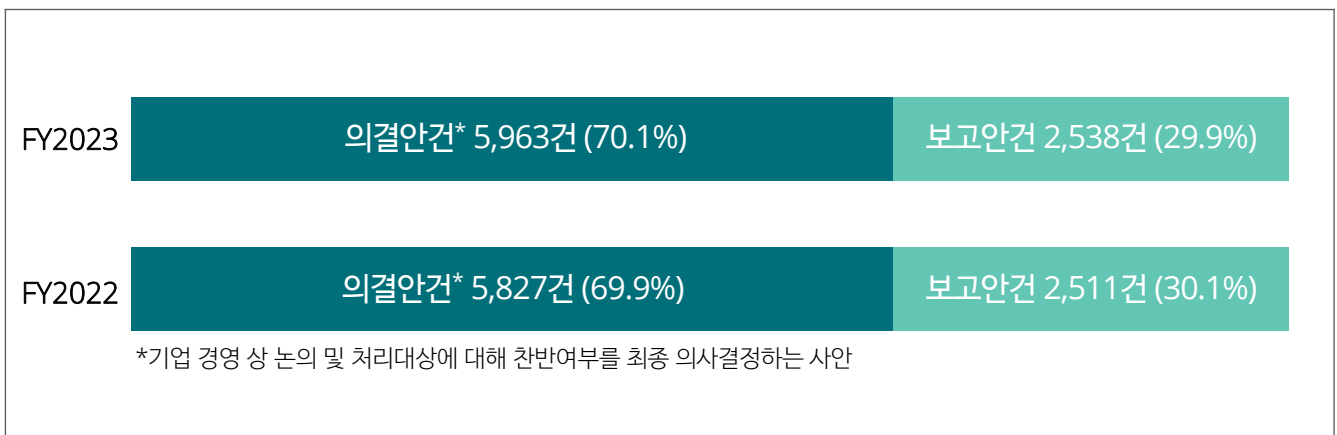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국내 이사회 안건 찬성률

- FY2023 기준, KOSPI 200 기업 이사회 의결안건은 5,963건(70.1%)이며 보고안건은 2,538건(29.9%)이고 전기대비 유의미한 변화는 없음

<그림 1> FY2022-FY2023 KOSPI 200 기업 이사회 의결안건 및 보고안건 비중 ⁵⁾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의 이사회 의결안건 중 반대건수는 28건(총 의결안건의 0.5%)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부결된 안건은 9건(총 의결안건의 0.2%)에 불과하였음 ⁶⁾

<표 4> 이사회 반대 안건과 가결 또는 부결 예시 ⁷⁾

구분	안건 예시
A사	• 해외 현지 자회사 설립의 건: 소수 반대로 안건 가결
B사	• 경영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다수 반대로 안건 부결
C사	• 000위원장 선임의 건: 다수 반대로 안건 부결
D사	• 00발전기금 출연의 건: 소수 반대로 안건 가결
E사	• 주식매도 청구권 계약체결(안): 다수 반대로 안건 부결

5,6,7)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FY2023 KOSPI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안건 공시 정보(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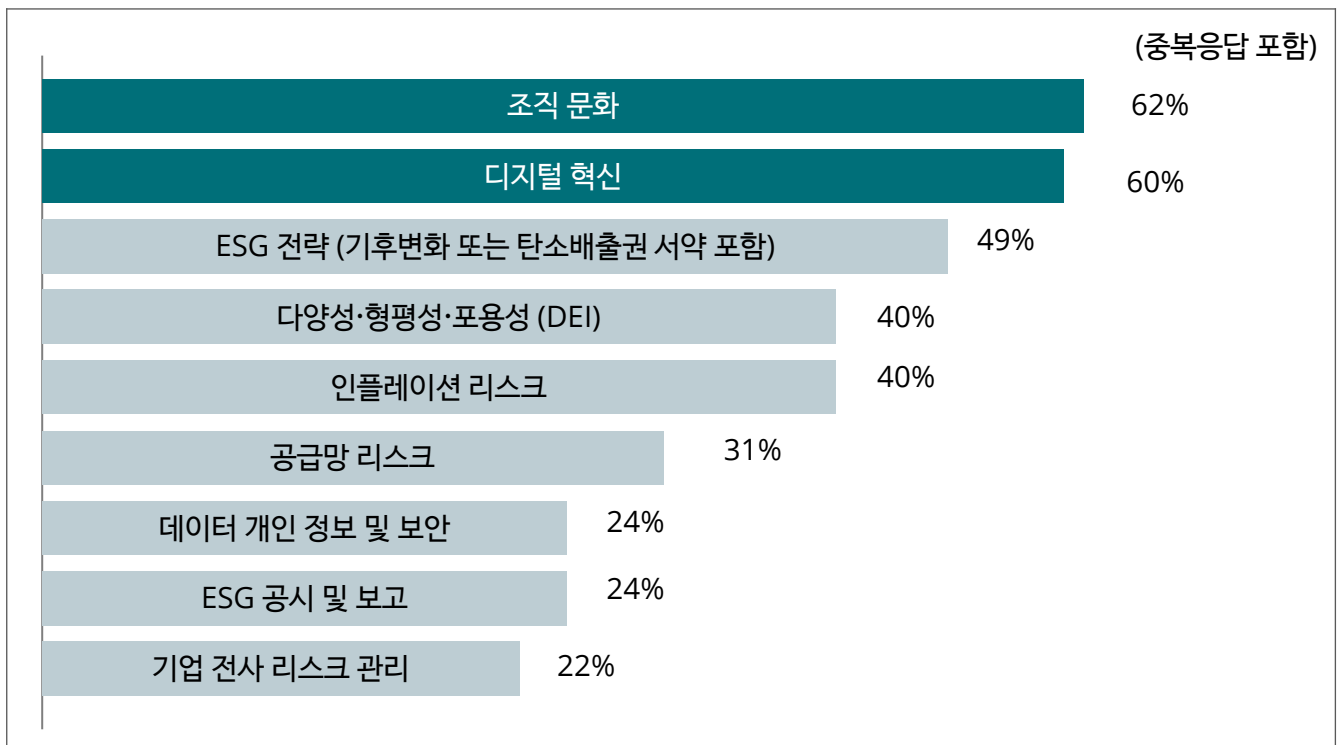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글로벌 이사회 안건 비중

- 글로벌 이사회회의 경우 '조직 문화' 및 '디지털 혁신' 이 Top2 아젠다이며 전기대비 ESG를 키워드로 하는 아젠다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 리스크'로 대표되는 경제 관련 아젠다가 부각되었음

<그림 2> FY2023/FY2022 이사회 안건 비중⁸⁾



- 글로벌 이사회 아젠다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 변동성과 같은 거시적 차원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으며, 기술발전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개선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와 위험을 가짐에 따라 다음의 5가지 항목을 이사회 아젠다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음

- 지정학적 격변 및 경제적 불확실성, 데이터 전환, 규제 검토 및 집행, 생성형 AI, 사이버보안

8) 딜로이트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3.01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그림 3> 2024년 주목해야 할 글로벌 이사회 안건 9)



9)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Living in "interesting" times : The 2024 board agenda」, 2024.03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국내 이사회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

- 지배구조 모범규준 상, 이사회는 연간 이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권고되고 있으며 운영상 다음의 사항들이 강조되고 있음
 - 이사회 의장의 리더십으로 이사진의 회의 참여 활성화
 - 회의록 작성 및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유지·보존
 - 이사회 감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만 참여하는 회의 실시 권장
- 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연평균 회의 횟수는 11.1회, FY2022의 경우에도 11.07회로 변화가 미미함
 - FY2023 기준 이사회 연평균 안건 수는 42.5건으로 전기대비 0.8건(1.9%p) 증가함

<그림 4> FY2023 vs.FY2022 KOSPI200 기업 이사회 연평균 회의 개최 횟수와 연평균 안건 수 ¹⁰⁾



<표 5> 지배구조 모범규준: 이사회 회의 - ② 이사회 리더십 >> 5. 이사회의 운영

구분	내용
5.2	• 이사회 의장은 적극적인 토론문화를 장려하고 이사회를 건설적으로 이끌어야 하며, 사외이사가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토대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5.4	•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연간 이사회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권고한다.
5.5	• 이사회 및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회의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녹취하여 이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중요한 토의내용과 결의사항은 이사별로 기록하여야 한다.
5.6	• 필요 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9	• 사외이사의 경영 감독·지원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만이 참여하는 회의를 이사회와는 별도로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10)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FY2022-FY2023 KOSPI200 기업의 사업보고서 상 이사회 안건 공시 정보(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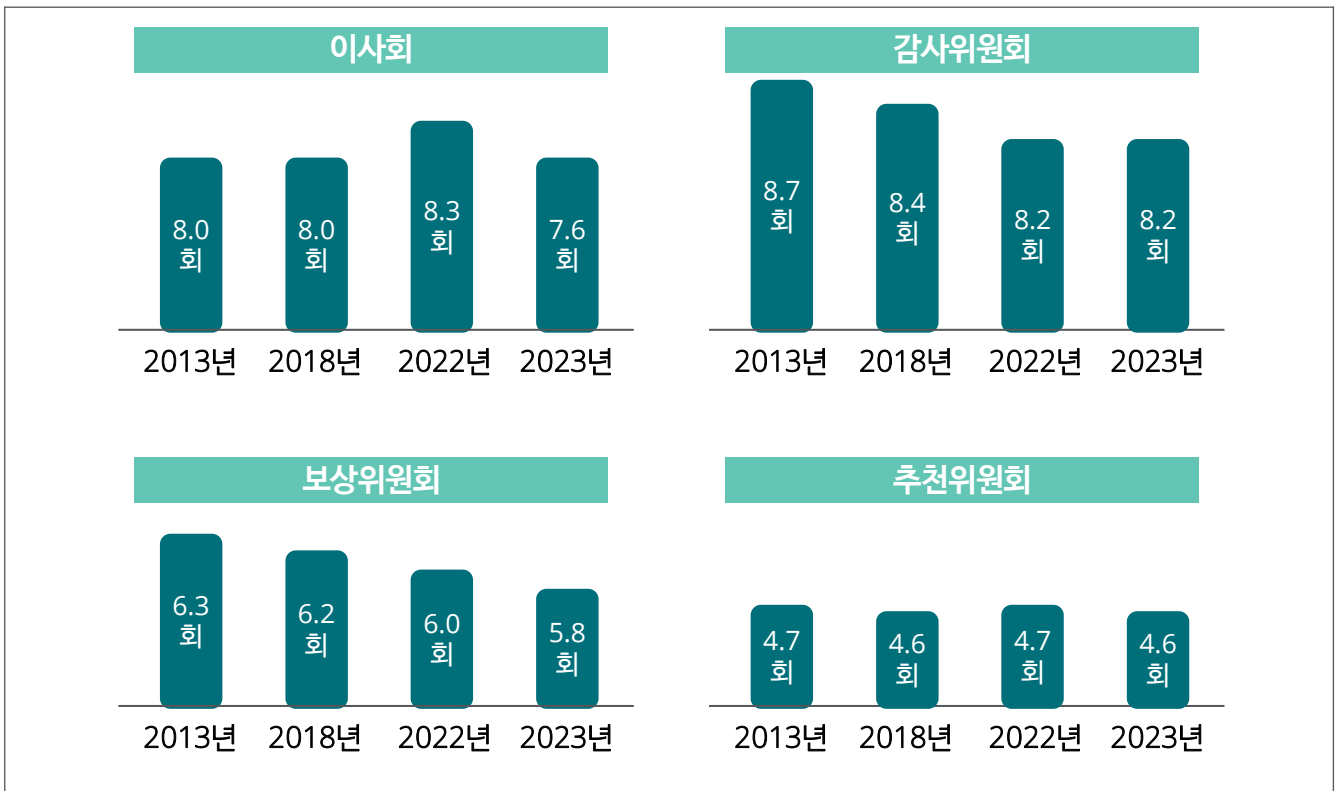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회의 동향 및 시사점

글로벌 이사회 평균 회의 개최 횟수

- FY2023 기준 S&P500 기업 이사회의 연간 평균 회의 개최 수는 7.6회이며 전기대비 0.7회 감소하였음
 - 이를 단순히 국내 이사회의 평균 회의 개최 수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진행 소요시간 또는 진행방식 등의 변수가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임
 - S&P500 기업 감사위원회의 경우 이사회 회의 개최 횟수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등 이사회 산하 위원회 활동이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항도 주목할 사안임

<그림 5> 글로벌 이사회와 위원회 연평균 회의 수 추이 ¹¹⁾



11) SpencerStuart, 「Board Index」, 2023.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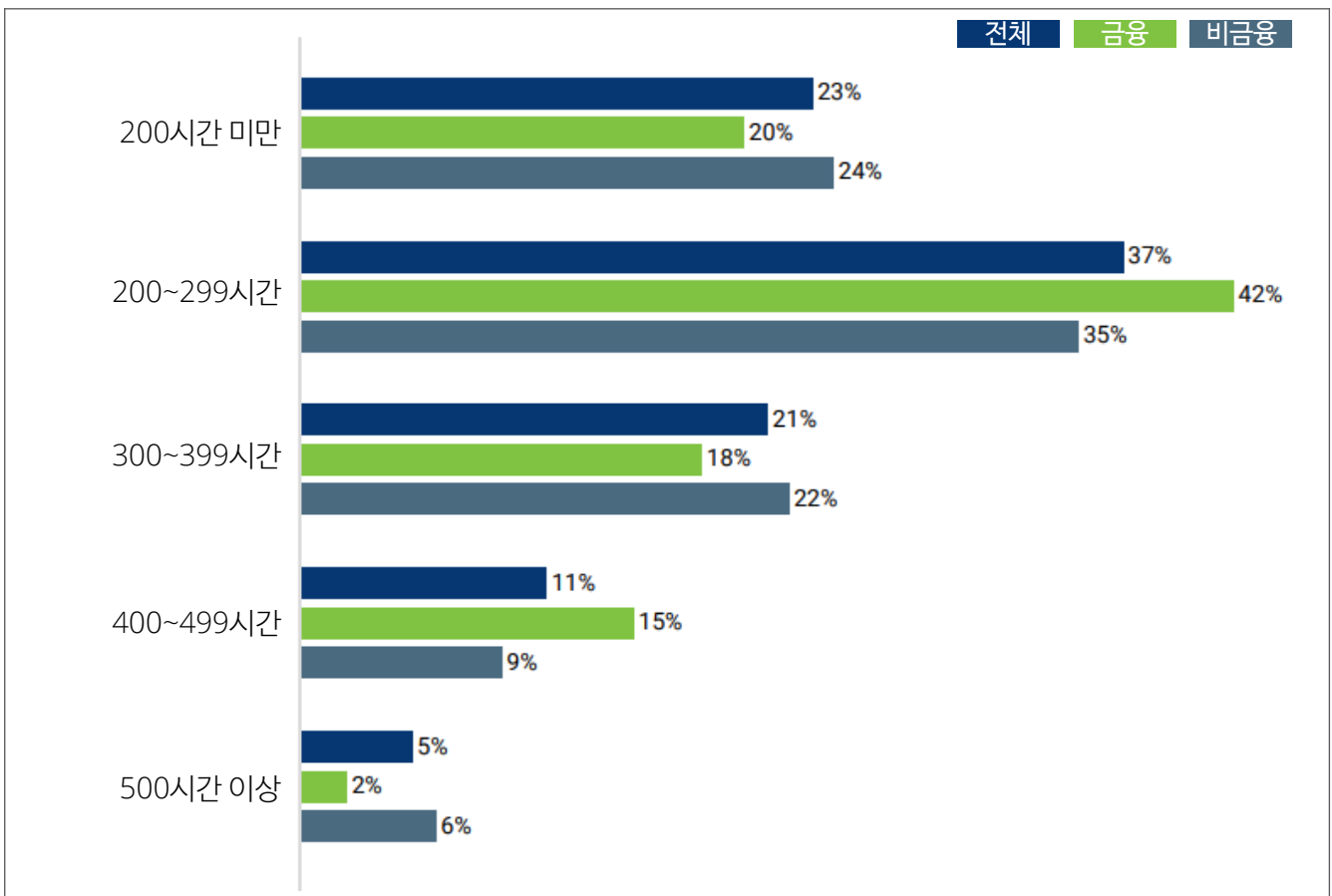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별첨] 글로벌 이사회 회의 별 평균 소요 시간 및 연간 업무 소요 시간

- FY2023 기준 글로벌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의 경우 회의 별 평균 소요시간은 2.73시간으로 나타났음
 - 금융산업은 평균 2.98시간, 비금융산업은 평균 2.63시간을 소요했다고 응답함
- FY2023 기준 글로벌 이사진의 37%는 평균 300시간 이상을 업무수행에 할애하고 있으며 5%의 이사진은 500시간 이상을 업무수행에 몰두 중임
 - 안건검토, 회의참석, 현장방문 및 개별 위원회 활동 등이 포함

<그림 6> 글로벌 이사회 연간 업무 소요 시간 분포¹²⁾



12) 딜로이트 글로벌 & CAQ, 「Audit Committee Practices Report: Common Threads Across Audit Committees」, 2024.03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유니레버 이사회의 안건 사례

- 다국적 소비재 기업인 유니레버의 이사회는 기업 경영철학과 사업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경영방향을 제시하는 안건을 다루고 있음
- 일례로, 동사의 이사회는 경영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도 Turn around 할 수 있는 안건 중 하나인 CEO 책임자를 선택해 제시하였는데, 이는 이사회의 독보적인 기여라고 평가받고 있으며¹³⁾ 이와 관련한 이사회의 안건 설정, 보고수령 및 의사결정 활동을 하기의 표로 정리함
 - 이사회가 선임한 CEO를 신뢰하고 소통하면서 중장기적 이해관계자 가치제고를 추구
 - 지속가능경영의 성과 측정을 위해 경영진과 소통하여 회장의 경영성과에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
 - 영국과 네덜란드 양국 본사 체제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각국 정부와 소통하면서 런던에 지주회사 설립
 - 이사진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표 6> FY2023 유니레버 이사회의 안건 영역 및 예시¹⁴⁾

안건영역	안건 예시
전략 및 경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성장전략 검토 및 승인 (생산성 향상, 프로세스 간소화, 신규 보상 프레임워크) • 프리미엄 냉동 요거트 회사 및 헤어케어 브랜드 기업 인수 및 계열사 매각 승인 • 그룹의 혁신 파이프라인 및 R&D 전략 검토
운영성과 및 재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대비 실제 성과/이행 정도 검토 • 사업계획, 재무 및 비재무 요소 KPI 검토 • 분기별 배당금 수준 검토 및 승인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산하 위원회 (감사위원회, 지속가능경영위원회, CEO승계위원회) 보고 수령 • CEO, 이사회 의장, CFO 선임 승인
기업문화 및 이해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간 참여 세션 프로그램 검토 •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보고서 정기 검토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보고 요건 및 관련 KPI 검토
정치 및 규제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시적 관점의 지정학적/사회적 환경에 대한 이슈 검토 • 글로벌 보안 이슈 검토 • 유관 법규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 검토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 효과성 평가 결과 검토 • 기업 위험관리계획 승인

13) 감사위원회포럼/포스코경영연구원 조용두 전 부원장, 「Unilever 성공 사례의 한국 기업 적용방안: 'G'를 중심으로 하는 ESG 경영」, 2023.07

14) Unilever, 「Annual Report and Accounts 2023」, 2024.03

II. CCG 아젠다 ②

FY2022-FY2023 KOSPI200 기업 이사회 안건 · 회의 동향 및 시사점

결언

- FY2023 기준 국내 KOSPI200 기업 이사회는 법규범에서 강제되거나 관행적이며 전통적인 사업·경영 감독영역을 중심으로 안건을 다루고 이를 수행 지원하기 위한 감독영역을 대부분의 안건으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이사회회의 총 안건 수는 8,501건으로 전기대비 163건(2.0%p) 증가하였으며 사업·경영 안건 비중(31.4%)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의 이사회 의결안건 중 반대건수는 28건(총 의결안건의 0.5%)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부결된 안건은 9건(총 의결안건의 0.2%)에 불과하였음
 - ‘거수기’ 등 선정적으로 표현되기보다 이사회에 상정되는 공식 안건들은 회의 이전에 이사진으로부터 사전 검증을 받고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 국내 KOSPI200 기업 이사회는 글로벌 이사회가 최근 ‘조직문화’, ‘생성형 AI’, ‘지정학적 격변’ 등을 키워드로 트렌드에 맞춰 안건을 상정하는 사례를 참고할 것이 권고됨
 - 추가적으로 글로벌 이사회에는 사이버보안 및 리스크 감독의 역할이 요구되는 추세이며 국내 이사회도 감독 영역을 확장하여 다양한 분야의 리스크 관련 안건을 설정하고 다룰 것이 권고되는 상황임
 - 유니레버 이사회에 대해서는 전략 및 경영계획, 운영성과 및 재무관리, 거버넌스, 기업문화 및 이해관계자, 지속가능성, 정치 및 규제환경과 리스크관리/내부통제 등 다양한 영역의 안건 설정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이사회 회의는 안건 검토, 보고수령 및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대표적 협의체로 FY2023 기준 KOSPI200 기업 이사회 연평균 회의 횟수는 11.1회, 다뤄지는 연평균 안건 수는 42.5건으로 평균적으로 회의 별 3.8개의 안건이 다뤄지고 있음
- 이와 대비되어 글로벌 S&P500기업의 FY2023 기준 이사회 연평균 회의 횟수는 7.6회이지만 진행 소요시간 또는 진행방식 등의 변수를 고려할 때 국내 이사회와 단순 비교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사회 안건 상정 및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장의 역할이 강조됨
 - 정기적으로 이사진에게 이사회에 상정할 일반적인 의제를 선정하고 평가하며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들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권고됨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요약

- 본고는 KOSPI 200 기업의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과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을 제공하고자 함
- 분석결과, '수익인식(28.4%, 90개)', '손상(27.4%, 87개)', '연결/지분법(15.8%, 50개)' 이 상위 3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불확실성 및 경영진 편의가 포함될 위험이 높은 항목이 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임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하여야 함
-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 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고 구체적인 선정 사유와 근거, 수행절차에 대한 충실한 기재를 감독하여야 하며, 이러한 항목에 대해 내부감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논의 배경

- 핵심감사제는 투자자들의 이해도 향상과 합리적 투자판단에 기여하기 위해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¹⁾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수행절차 및 결과를 감사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하는 제도임
 - 2016년부터 수주산업 대상으로 핵심감사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였고, 2018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20년부터는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됨
- 핵심감사제 관련 감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역할은 크게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과 '선정 핵심감사사항 감독'으로 정리할 수 있음
 -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 한 사항 중에 선정되므로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을 적절히 선정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여야 함
 - 회계감사기준 260(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문단10은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기구로서 지배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언급하며, 금융위원회에서도 외부감사인이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사기구와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할 것을 요구함(2017)²⁾

1) 회계감사기준 260(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은 기업의 전력방향 및 수탁책임과 관련된 의무를 감시할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조직을 지배기구로 정의함

2) 금융위원회, 「핵심감사제 전면 도입 등을 위한 회계감사기준 개정」, 2017.12.20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은 수행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사보고서의 커뮤니케이션 가치를 향상하며,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과 유의적인 경영진 판단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³⁾
- 감사위원회에 부여된 회계감사 역할의 일환으로, 선정된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감독을 수행해야 함
 - 핵심감사사항이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외부감사인인 수행하는 감사에 대한 감독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재무보고 감독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살펴야 함
 - 감사위원회는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 수행절차에 대한 충실한 기재를 감독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기여해야 함

<표 1> 핵심감사사항 선정절차 및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내용
[1단계] 감사위원회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대상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하게 왜곡표시될 위험 또는 유의한 위험이 높은 분야 • 유의한 경영진의 판단, 높은 추정 불확실성 • 당기 발생한 유의적인 사건 또는 거래가 감사에 미치는 효과
[2단계] 외부감사인의 유의적 주의 요구사항 파악,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파악 및 핵심감사사항 선정
[3단계] 감사보고서에 핵심감사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감사사항으로 결정된 이유 • 해당 사항이 감사에서 다루어진 방법

- 본고는 KOSPI 200 기업의 FY2022-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과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3) 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2023 사업연도 말 KOSPI 200 기업의 감사보고서⁴⁾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의 분류기준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분석기준⁵⁾을 적용함

<표 2> 2022~2023년 사업연도 KOSPI 200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⁶⁾

핵심지표	2023년		2022년		2022-2023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개수 변동률	비율 변동률
수익인식	90	28.4%	86	23.8%	4.7%	4.6%
손상	87	27.4%	107	29.6%	-18.7%	-2.2%
연결/지분법	50	15.8%	43	11.9%	16.3%	3.9%
기타	21	6.6%	20	5.5%	5.0%	1.1%
대손충당금	13	4.1%	17	4.7%	-23.5%	-0.6%
공정가치 평가	12	3.8%	34	9.4%	-64.7%	-5.6%
사업결합	11	3.5%	10	2.8%	10.0%	0.7%
채고자산	11	3.5%	7	1.9%	57.1%	1.5%
개발비	8	2.5%	5	1.4%	60.0%	1.1%
법인세	6	1.9%	14	3.9%	-57.1%	-2.0%
충당부채	4	1.3%	9	2.5%	-55.6%	-1.2%
특수관계자	2	0.6%	7	1.9%	-71.4%	-1.3%
리스	2	0.6%	2	0.6%	0.0%	0.1%
총계	317	100%	361	100%	-12.2%	0.0%

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기준)를 수집하여 조사함

5) 금융감독원, 「2020년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기재실태 분석 및 시사점」, 2021.12.01

6)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분석, 조사 대상은 FY2023 및 FY2022 KOSPI200 기업으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감사보고서(연결감사보고서 기준)를 수집하여 조사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분석결과, 2023년 KOSPI 200 기업의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은 '수익인식(28.4%, 90개)⁷⁾, '손상(27.4%, 87개)', '연결/지분법(15.8%, 50개)' 이 상위 3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불확실성 및 경영진 편이가 포함될 위험이 높은 항목이 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임
 -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라 수익인식의 형태가 다르지만, KOSPI200 대부분의 기업에서 투입법에 따른 수익인식, 수익의 발생사실이나 기간귀속이 주로 선정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서 새로운 유형 또는 특수한 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의 적정성이 선정되고 있음
- 최다 기재항목으로 선정된 수익인식(28.4%, 90개)의 경우 기업의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은 회사의 핵심 재무성과 지표 중 하나로 평가되어 추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다양한 판단 요소들이 개입되는 항목이므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 기업의 계약구조가 복잡화되고, 다양한 조건과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수익인식에 어려움이 발생함
 - 수출매출은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Incoterms 2020)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 다양할 수 있고, 제품의 출고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해 수익인식 시점에 왜곡표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제조업의 경우 물류대행비 등 다양한 방식의 판매 장려 또는 촉진 정책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대가 관련하여 추정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수익인식 과정에서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함
 - 건설사의 경우 투입법 등을 토대로 수익인식을 수행하며, 총계약수익은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 및 위약금 등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공사수익금액은 누적 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률의 평가 등에 경영진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

7) 자산의 진부화,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감소를 손실로 반영 (예시: 영업권 손상인식, 유형자산 손상인식, 투자주식 손상인식 등)

8) 실무적으로 수출품 납품과 관련한 운송·보험계약 체결자, 운임·보험료 부담자 등 각종 의무·비용 부담자를 정해주는 조건 및 각 거래조건 사용 시 수출입자의 역할을 해석한 규칙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신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는 금융감독원의 '2023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⁹⁾에 포함되는 항목임
 - 개정 수익인식기준(K-IFRS 제1115호)¹⁰⁾이 '18년에 시행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으나 동 기준서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19, '23)¹¹⁾,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지 않거나('20¹²⁾, '24¹³⁾), 발생사실이나 기간귀속이 부적절('18, '21)¹⁴⁾한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수익인식은 거의 매년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포함되는 사항임
- 두번째로 많이 기재된 항목인 '손상(27.4%, 87개)'의 경우 회수가능액 측정 시 할인율, 성장률 및 미래현금흐름 등 경영진의 유의적인 판단과 추정치가 수반되기 때문에 감사 수행시 경영진의 편이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선정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임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경쟁 심화 등으로 현금창출단위 손상 및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손상 검토 시 경영진의 주관적 판단이 수반되는데, 손상 테스트는 자산의 장부가가 회수가능액보다 높은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은 상당한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함
 - 미래 현금 흐름 예측, 할인율 적용, 자산의 공정가치평가 등의 경우 경영진의 주관에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주의를 필요함
 - 자산손상 인식 시 당기순이익 등의 감소가 발생하므로, 경영진은 손상을 최소화하거나 회피하려는 압력을 받을 수 있음
- 수익인식 항목은 전기 대비 4.6%p 상승(2위→1위)하고, 손상 항목은 2.2%p 하락(1위→2위)하여 두 항목의 순위가 바뀌었는데, 이는 각 항목이 해당 연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된 영향으로 보임
 -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가 '2022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선정된 바 있음

9) 금융감독원,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업종 사전예고」, 2022.06.27

10) 재무제표 이용자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시기, 불확실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익의 구분, 계약 잔액, 수행의무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함

11) 신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 12) 장기공사계약(조선·건설 외) 13) 장기공사수익 14) 국외매출회계처리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세번째로 많이 기재된 항목인 연결/지분법(15.8%, 50개)¹⁵⁾의 경우,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은 대규모 국제기업결합 건의 영향으로 기업결합 금액이 증가하였고¹⁵⁾, 연결 및 지분법 적용 기업에 대한 평가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사의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되는 빈도가 높을 것으로 추정함
- '연결/지분법'은 그 특성상 '사업결합' 및 '손상'과 연관되며, 사업결합의 경우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손상의 경우 기 인식된 종속·관계기업투자주식 및 영업권의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것임
 - 연결 및 지분법 회계처리는 여러 주관적인 판단¹⁶⁾이 요구되며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다수의 주관적인 가정이 개입될 수 있음
 - 자회사나 피투자회사의 재무정보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며 자회사가 해외에 위치하거나 정보 시스템이 다른 경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움

15)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3년 기업결합 심사 동향 발표」(24.03.15)에 따르면, '23년 기업결합은 건수는 전년 대비 9.7%(100건) 감소하였고, 금액은 32.2%(105조원) 증가함

16) 예를 들어 지배력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의 의도와 실질적인 영향력을 평가해야 하며, 이는 외부감사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 있음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시사점 및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 핵심감사제 도입의 목표 중 하나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것인 만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심감사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하여야 함
 - 감사위험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사항들만 기재될 수 있도록 관용구 사용이나 단순 나열 등 핵심감사사항의 정보량만 늘리는 공시 행태를 지양하고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기업 특유 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음¹⁷⁾
 - 외부감사인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배경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핵심감사사항의 공시품질의 제고나 회사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확한 공시를 유도할 수 있음¹⁸⁾
 - 핵심감사사항 후보 논의단계부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해야 하며 감사보고서에 기재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는 외부감사인의 결정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해야 함
- 핵심감사사항은 외부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을 의미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재무보고 감독 과정에서 핵심감사사항을 주의 깊게 살피고¹⁹⁾, 구체적인 선정 사유와 근거, 수행절차에 대한 충실한 기재를 감독해야 하며, 해당 항목에 대해 내부감사를 철저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음

17), 18)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학회, 감사보고서 개편 영향 분석 연구 심포지엄 발표자료 「감사보고서 개편 영향 및 핵심감사사항 보고 사례 연구」, 2023.05.24

19)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문단 A3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 금융당국은 매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를 선정하여 사전예고를 통해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 및 회계감사 수행시 관련 부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당해 중점심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감사인과 논의해야 할 것임

<표 3>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선정 현황 (4개년)

구분	내용
2025년 ²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익인식 회계처리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의 적정성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
2024년 ²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2023년 ²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新수익기준 관련 회계처리 현금 및 현금성자산 실재성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회계처리
2022년 ²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영업이익표시 및 영업부문정보 공시

[별첨] 핵심감사사항 평가 체크리스트

<표 4> 금융감독원 핵심감사사항 평가 체크리스트 ²⁴⁾

대분류	소분류	내용	관련 기준
형식	형식상 기재	• 핵심감사사항이 없을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6
		• 적절한 소제목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1
		• 변형의견 표명을 관련 핵심감사사항으로 기술하지 않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2
		•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사항을 핵심감사사항에 기술하지 않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5
		• 재무제표의 별도 구성요소에 대한 별개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4, A51
		• 핵심감사사항 기술시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주석)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13
		• 당기 대상 재무제표, 해당 재무제표의 구체적 대상기간을 명기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33

20) 금융감독원,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4.06.14

21) 금융감독원,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3.06.14

22) 금융감독원,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2.06.27

23) 금융감독원, 「2022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 2021.06.28

24)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핵심감사사항(KAM)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2022.12.29

III. 데이터 포인트 ①

KOSPI 200 FY2023 핵심감사사항 기재항목 현황

<표 4> 금융감독원 핵심감사사항 평가 체크리스트 (계속) ²⁵⁾

대분류	소분류	내용	관련 기준
내용	일반	• 법인의 표준화된 문구를 사용한 빈도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7
	핵심감사사항 선정 이유	• 기업 특유의 사항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4
		• 핵심감사사항의 선정 원칙이 기준서와 부합하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9
		• 감사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감사인이 가장 유의적인 사항 중 하나로 결정하도록 한 주요 고려사항을 언급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5
	핵심감사사항에 대응한 감사절차	• 해당 사항에 가장 관련성이 있거나 평가된 중요 왜곡표시위험에 특유한 감사인의 대응 및 접근방법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
		• 수행된 감사절차의 개략적 개요를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
		• 감사절차의 결과에 대한 암시를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
		• 해당사항과 관련한 주요 관찰사항을 기재하였는가?	감사기준서 701 문단 A46, A47

25) 금융감독원, 「감사보고서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핵심감사사항(KAM)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2022.12.29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요약

-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24.7.3.)에 따라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감면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 시행 예정임
-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관련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임
-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제고하고, 제재 운영지침(안)을 통해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논의 배경

- 책무구조도 도입 등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24.1.2. 공포)이 7월 3일부터 시행되었음¹⁾
 - 개정 지배구조법은 (1) 책무구조도 도입, (2) 임원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이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 및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부여, (3) 이사회내 내부통제 역할 강화 및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의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4) 내부통제등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한 신분제재 부과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및 관행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개정 지배구조법 관련 금융권과의 소통을 통해 확인된 다양한 금융권의 질의사항 등에 대한 답변내용을 담은 해설서를 마련하여 공개하여, 책무구조도 등이 안정적으로 금융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음²⁾
 - 해설서에는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기준·범위 등과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이행 및 위반시 제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내부통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포함하고 있음

1)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 2024.06.26

2) 금융위원회,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07.03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우려, 신설 제도 준수에 대한 부담 등으로 인해 법정 제출기한에 앞서 조기 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 대표이사 및 임원(이하 '임원등')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부터 본인의 책무와 관련하여 관리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조치를 미이행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등은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음
- 이에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책무구조도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한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을 마련함³⁾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주요 내용

-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운영 위한 시범운영 실시
 - 책무구조도의 법정 제출기한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추후 타권역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 책무구조도의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4.10.31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되며,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25.1.2.까지 내부통제등 관리조치를 시범운영할 수 있음
- 시범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 금융감독원은 시범운영기간 중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임
 -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임
 -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할 예정임

3) 금융위원회,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2024.07.12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표 1> 비조치의견서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적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운영기간(금융회사가 '24.7.10. 이후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 ~ '25.1.2.까지)
적용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기한('24.7.11.~10.31.) 중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금융회사 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지배구조법 제 7조(지배구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의 확인 공시·보고에 한정), 제 30조의2, 제30조의3 또는 제30조의4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제34조, 제35조, 제35조의2 또는 제43조에 따른 제재는 하지 않음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주요 내용

- 개정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제1항은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동조 제2항은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정도·결과, 상당한 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조치를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동 조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금융회사 임원등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임원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제재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운영지침을 마련함
-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시 위법행위의 경위 결과 정도 등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상당한 주의 여부 등에 대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제재 및 감면 여부를 판단함
 - '상당한 주의' 관련 적용례는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으로서 내부통제의 적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며,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의 책무, 실제 내부 통제 관리조치 이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 필요

1) 위법행위 고려요소: 위반행위의 경위·정도·결과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상 기관에 대한 제재 사유, 과거 검사사례 분석 등을 토대로 8개의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함
 - 8개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며,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제재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체 조사 및 징계 등을 통해 조치하게 됨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표 2> 위법행위 고려요소 구성⁴⁾

구분	내용	중대한 위법(예시)
위법행위의 발생 경위 및 정도	① 관리의무의 미이행	• 관리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극히 형식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미이행한 경우
	② 임원등의 지사·묵인 또는 조장·방치 등	• 금융회사의 사업목표 계획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진의 무리한 판매 독려 과정에서 임원등이 불완전판매를 지사·묵인 또는 조장·방치한 경우
	③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행위	• 대다수의 점포에서 동일한 위법행위 발생, 특정 부서 또는 점포가 단기 실적에 치중하여 조직적으로 위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거나, 위법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우
	④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행위	• 동일 업무의 장기 근무 등으로 인해 횡령 등 위법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경우, 기본적 내부통제체계의 부재로 동일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도록 방치되어 온 경우
	⑤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 동종·유사한 민원의 대량 접수, 유사 위법행위의 재발 등 위법행위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대내외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경우
위법행위결과	①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개인신용정보의 무단 유출 등 피해·위반 규모가 기관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건전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 인허가영업행위규제 취지를 형해화시킬 만큼 중대 또는 다수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한 경우
	③ 금융시장 신뢰·질서 훼손	• 금융시장의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4)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안)」, 2024.07.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2)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 상당한 주의

- 상당한 주의 여부는 임원등이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해 예측가능하였는지 여부(예측가능성)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결과 회피)를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임
- 예측가능성은 금융회사의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통사적인 임원등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 수준을 기준으로, 위법행위 등 결과 발생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통사적인 주의와 노력을 기울리한 결과 위법행위 등 결과의 발생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 상당한 주의 결여임
- 조치의 실효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4가지 주요 고려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함

<표 3> 조치의 실효성 유무 판단을 위한 주요 고려요소

주요 고려요인	내용
위험요소에 대한 파악 여부	• 업무 관련 리스크 요인,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인식 예측 여부, 인사이동 등 책무의 추가 변경 시 적절한 리스크 파악 노력 등 고려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등의 준수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점검체계의 구축·운영 및 점검 수행 등 적절한 조치의 이행 여부	• 내부통제기준의 효과적 집행·운영 준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점검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법령 등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의 수행, 점검결과에 대한 문제제기, 개선 등 합리적 조치 등 이행 여부 등 고려
내부통제등의 개선 노력 및 성과	• 내부통제등의 개선 실적 등(인력·조직의 조정,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한 교육·훈련의 지시 등)
의사결정 절차·과정의 합리성 및 투명성 유무	• 의사결정 규칙의 명확성, 의사결정 과정이 객관적 검토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문서에 의한 투명한 관리 여부 등 고려

- 감독당국은 검사 및 제재 과정에서 임원등에게 '상당한 주의'를 다 하였는지에 대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고, 임원 등은 문서 이메일 전산시스템 기록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통해 관리의무를 사전에 적절하게 이행하였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음
 - 관리조치의 이행과 관련하여 전후 사실관계, 구체적인 관리의무 수행 방법 및 내용, 내부통제등 점검 이후 시정·개선·보완 등 지시 내용, 내부통제등 점검 결과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 사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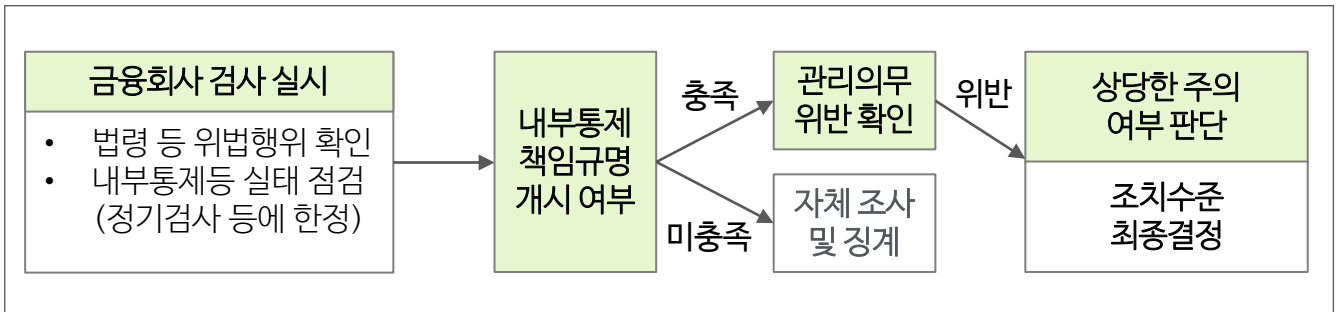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적용 방안

- 위법행위 요소로서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행위자 책임 관련요소로서 상당한 주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제재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그림 1> 위법행위고려요소구성



- 1차적으로 '위법행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직접 책임규명 절차를 개시(Trigger)하게 되며, 실제 금융사고 등 소속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검사 과정에서 임원등이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
 - 8개 세부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될 경우 인정
- 2차적으로 '행위자 책임 고려요소'를 기준으로 상당한 주의 여부 및 그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함
- 최종 조치수준은 지배구조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임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결과), 상당한 주의 수준(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임
 - 추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결과·원인 등에 따른 제재유형 등 구체적 제재 양정 기준을 마련 예정

<표 4> 조치양정시 감면가능성 검토 예시

상당한 주의 수준 위법행위 결과 등	상당한 주의 수준		
	상	중	하
중대	감면가능성 ↑	감면가능성 -	감면가능성 -
보통	감면가능성 ↑↑	감면가능성 ↑	감면가능성 -
경미	감면가능성 ↑↑↑	감면가능성 ↑↑	감면가능성 ↑

IV. 주요 규제 동향 ①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 관련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안) 마련

기대효과

- 제재 운영지침(안)은 '24.8.30.까지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회사는 각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음
- 시범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 등 운영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0월 3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 제재 운영지침(안)을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책무구조도 등 신설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금융권에 책임 있는 내부통제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임

IV. 주요 규제 동향 ②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요약

-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가 대규모 주식거래 시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개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4.7.24.부터 시행될 예정임
-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세부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논의 배경

- 상장회사 임원 등 내부자의 대량 주식 매각으로 주가가 급락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투자자 불만과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내부자들이 접근이 용이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할 경우 주가하락 등 피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 이에 정부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자본시장 분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¹⁾
-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동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입법예고되었던 2개의 하위규정²⁾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표 1>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 경과

구분	내용
'22.9.12.	• 금융위원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발표 ³⁾
'23.12.28.	•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및 본회의 통과
'24.2.29.	•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4.7.9.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4.7.24.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1) 금융위원회,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2023.12.28

2)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차규정）」,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규정)」

3) 금융위원회,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 마련, 상장회사 내부자의 주식거래시 사전공시하여 일반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시장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2022.09.12

IV. 주요 규제 동향 ②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제도 개요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상장회사 내부자가 당해 회사의 특정증권 등을 대규모로 거래하고자 할 때 그 거래계획을 사전에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제도임
- 법상 공식 명칭은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이며,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00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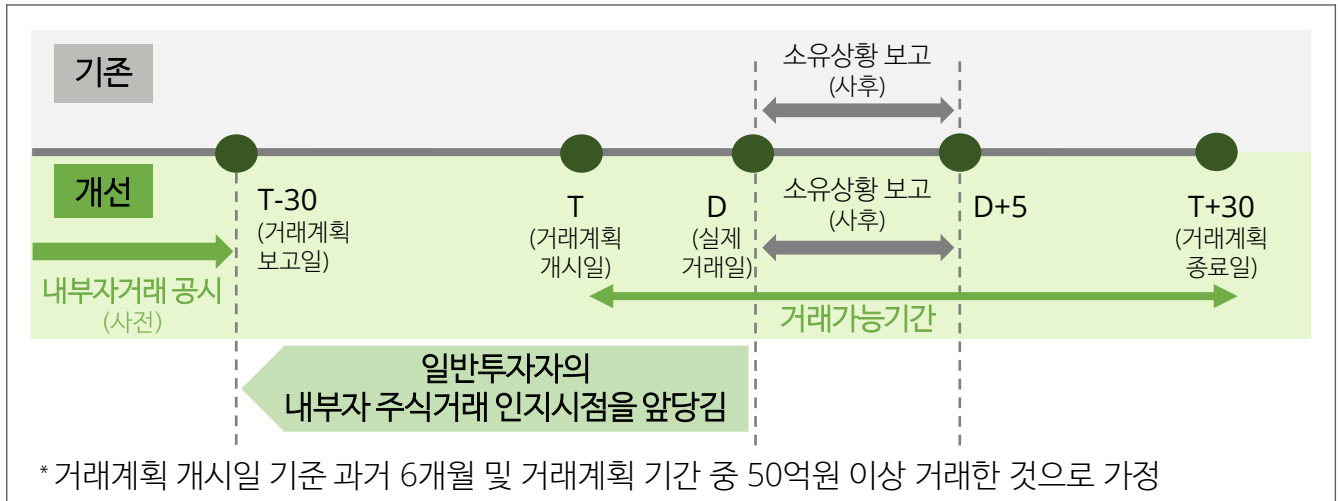
<표 2>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요약표

구분	내용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선물위원회, 거래소 - DART를 통해 공통서식으로 제출
보고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 임원 • 상장회사 주요주주(일부 예외) - 당해 상장회사 임원 및 주요주주에 한함
보고대상 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특정증권등 - 주식, 채무증권(순수채권 제외), 증권예탁증권, 전술한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보고대상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당해 거래계획 상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 ② 당해 거래계획의 거래개시일 기준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 → ①+②가 특정증권등의 총수의 1%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일부 예외)
보고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계획 상 거래개시일 30일 전까지
변경·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 사전 공시한 거래계획 상 거래금액의 ± 30% 이내에서 변경 가능 • (철회)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철회보고서 제출하여 철회 가능
위반 시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조치(경고, 주의, 과징금) - 과징금의 경우 발행회사 시가총액(시가총액 1천억 미만인 회사의 경우, 최저시가총액 1천억원 적용)의 0.0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20억원 초과 시 20억원) 내에서 부과
시행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7.24. 시행 -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거래계획에 따른 거래부터 적용

IV. 주요 규제 동향 ②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그림 1>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의 주식거래* 관련 공시의무 변화



주요 내용

1)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 구체화

- 법률은 상장회사의 임원*·주요주주**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특정증권*** 등) 거래계획에 대해 사전공시의무를 부과하되, 시행령으로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내부자를 규정하도록 함
 - * 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집행책임자 등)
 - ** 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
-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가능성이 낮고, 투자전략 노출 위험이 있는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 이에 시행령에서는 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함
 - 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IV. 주요 규제 동향 ②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2)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거래유형 구체화

-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거래(매수 또는 매도) 및 특정 거래유형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표 3> 사전공시면제 대상

사전공시 면제대상	구체적 기준
면제대상 거래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특정증권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과 50억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고의무를 면제함
면제대상 거래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상속, 주식배당, 주식양수도 방식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 매매 등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3)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구체화

- 법률에서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관련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시행령에서는 사전공시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함
-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을 보고하지 못하도록 함
-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법률이 위임한 최대 규모인 30%로 정하여 사전공시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보고기한은 사전공시의무자의 사전공시 부담,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보고하도록 함
 - 법 시행일인 7월 24일부터 30일이 지난 8월 23일 이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됨

IV. 주요 규제 동향 ②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4)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거래계획 보고자가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규정

- 법률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
 - 거래계획 보고자의 사망·파산,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5)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방식 구체화

- 법률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계획 미공시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 시가총액의 1만분의 2,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령 등은 시가총액, 거래금액, 위반행위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함

시사점

- 7월 24일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되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되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주식매각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는 내부자거래를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시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신설된 규제로 동 제도의 신설로 기존에 내부자의 특정증권 등 거래에 따른 사후 보고 의무로서 부과되던 '임원등의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보고' 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함

IV. 주요 규제 동향 ②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

[별첨]

<표 4> 사전공시제도 관련 조문 번호

구분	관련 조문
면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1항
면제대상거래규모 및 거래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1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2항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이하 단차규정) 제9조의3
사전공시절차및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2항 제1항, 제2항, 제3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3항, 제4항, 제6항 • 단차규정 제9조의4
거래계획철회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 제173조의3 제4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0조의3 제7항 • 단차규정 제9조의6 및 제9조의7
과징금산정방식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법 제429조의 제5항, 제6항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379조 제6항 및 제7항 •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개정안 별표 제2호 및 제3호

V. FAQ ①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올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추진 중인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특징, 진행경과 및 성과는 어떤가요?

- 일본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1년에 본격 시행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약 10년 전부터 진행되어 옴
- 일본은 2013년부터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위해 일본재흥전략을 발표하여 기업지배구조 코드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으로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기틀을 마련함
 - 2014년에 스튜어드십 코드¹⁾를 도입하여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하도록 유도함²⁾
 - 2015년에 기업지배구조 코드를 도입하여 주주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으며, 도쿄증권거래소(Tokyo Stock Exchange, TSE)의 기업지배구조 공시가 의무화되어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회사의 경영 방식을 설명할 의무를 갖게 됨
 - 기업지배구조 코드는 독립 사외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의 최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요구하며,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독립 사외이사의 비율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권장함
- 일본재흥전략은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주주가치 증대를 위한 전략을 채택하도록 장려하였으며, 이는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보다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함
- 2021년부터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서 경영의 자본 효율성을 강조하고 프라임 시장³⁾이 개편됨
 - 일본 정부는 상장기업들이 '자본비용을 고려한 경영활동'을 실행하도록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도한 현금 보유를 줄이고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환원을 강화하도록 독려함

1)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2) 일본 공적연금(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GPIF)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2015년 UN 환경계획의 파트너로서 책임투자를 지향하는 투자자 이니셔티브인 책임투자원칙주도기구(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에 서명했으며, GPIF의 투자운용원칙에 '모든 투자자산에 대해 ESG요소를 반영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일본은 2023년 말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에 324개 기관투자자가 가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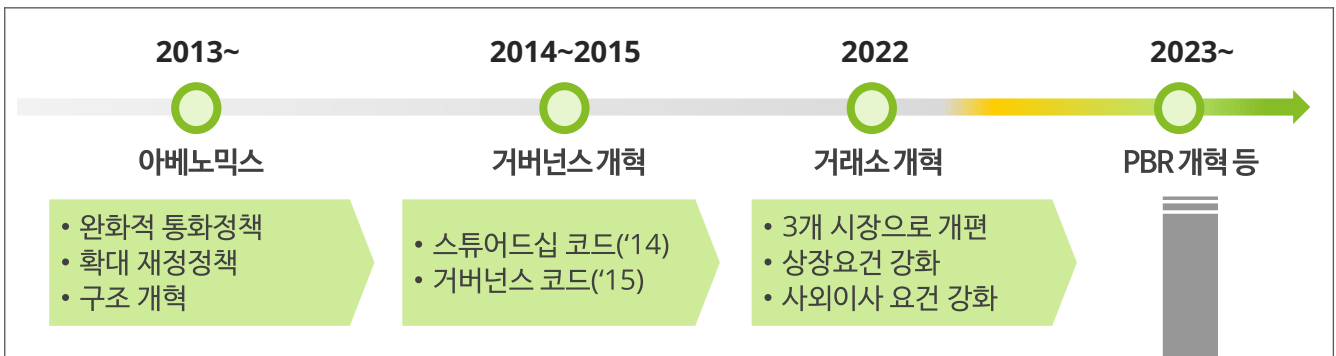
3) 일본의 대형 우량 기업이 주로 상장되는 시장으로 국내의 코스피 시장과 유사함

V. FAQ ①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 2022년 4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시장체제 개편을 통해 프라임 시장을 개편하여 상장기업들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자본비용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요구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고, 일본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 2023년 3월 도쿄증권거래소는 글로벌 투자자 진입 유도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PBR이 1배 이하⁴⁾인 프라임과 스탠다드 시장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 일본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 '자본효율성과 주가를 고려한 경영'을 포함한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협조를 요청함

<그림 1> 일본 기업가치 제고 노력 타임라인⁵⁾



<표 1> 도쿄증권거래소 추진과제 주요내용⁶⁾

구분	내용
자본효율성·주가를 고려한 경영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 프라임·스탠다드 상장법인 대상 자본효율성 등을 매년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및 진행상황 공시하도록 요청
기업지배구조의 질 향상	• 'Comply or Explain' 제도의 이행이 미흡한 상장법인 대상 개별지도 등 보완 요청 등
주주와의 대화 강화	• 투자자와의 의사소통 강화를 독려
영문공시 확대	•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영문공시 확대 독려

- 도쿄증권거래소는 자본효율성·주가를 고려한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현황분석 → 계획수립·공시 → 실행'의 단계적 이행을 권고하며, 해당 프로세스의 진행상황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함

4) 추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은 회사 청산 시 주주가 받게 되는 자산가치보다 현재주가가 낮다는 뜻으로 통상 저평가 상태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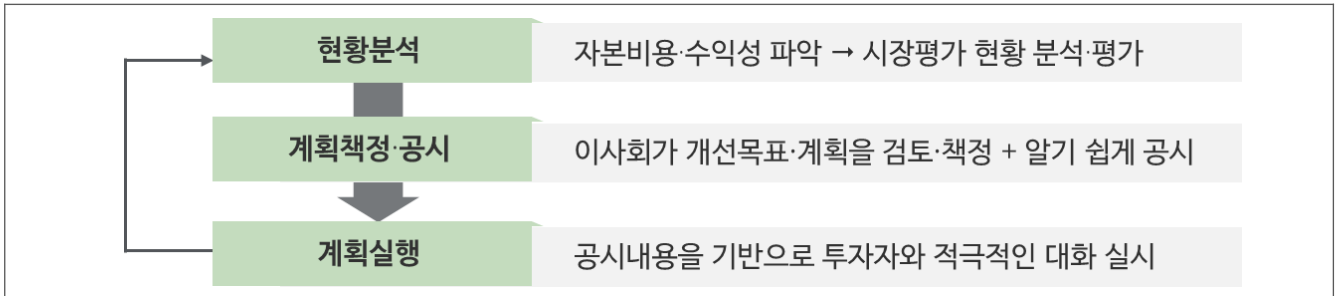
5) 자본시장연구원,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해외사례 및 시사점」, 2024.02

6)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한국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02.26

V. FAQ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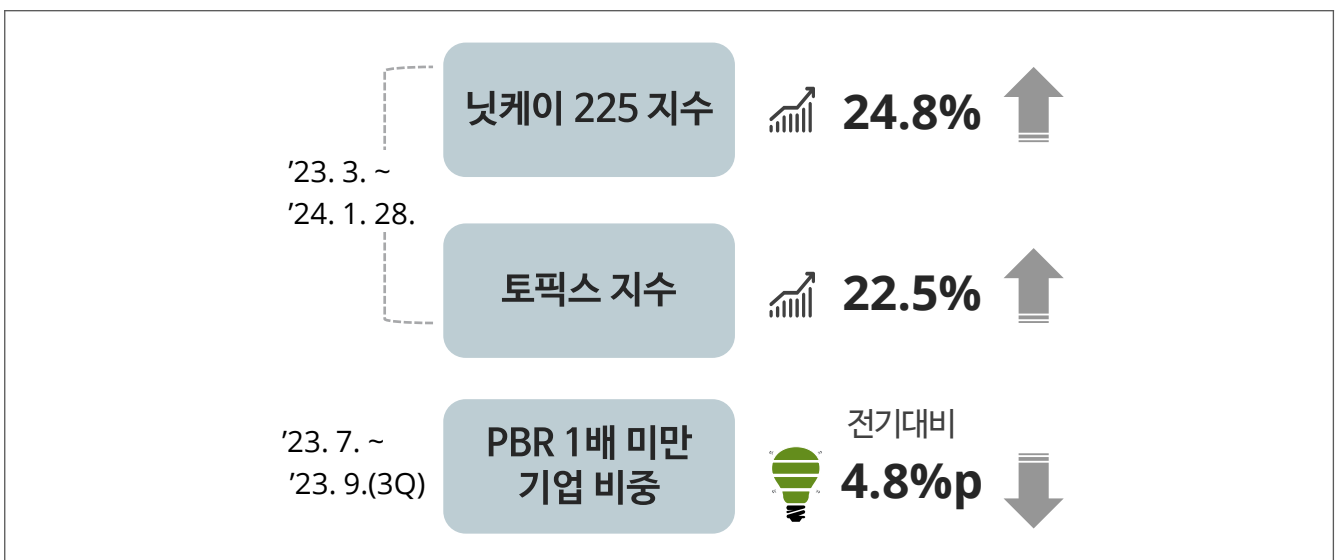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그림 2> 도쿄증권거래소 자본수익성 개선계획 안내사항 세부내용 7)



- 한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신규지수(JPX 프라임 150 지수)를 출시('23.07.)하고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상장함('24.01.)
 - JPX 프라임 150 지수는 프라임 시장 상장사의 시가총액 상위 500개 기업 중에서 자본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이 높은 150개 기업으로 구성됨
-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기업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요구한 이후, 2024년 1월 28일까지 닛케이225⁸⁾ 와 토픽스⁹⁾는 각각 24.8%, 22.5% 상승하며 선진국 내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여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¹⁰⁾
 - 2023년 3분기에는 도쿄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중 PBR 1배 미만인 기업은 2022년 4분기 50.6%에서 45.8%로 4.8%p(180개) 감소함

<그림 3>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성과



7)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한국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024.02.26

8)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225개 종목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가지수

9) TOPIX(Tokyo Stock Price Index), TSE Prime: 일본의 종합 시장지수

10) ACGA가 발표한 2023년 아시아 12개국 기업지배구조 순위(CG Watch)에서 일본은 호주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호의적임

V. FAQ ①

일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 도쿄증권거래소는 2024년 2월, 일본 밸류업 우수 공시 기업 29개사를 선정하여 기업에서 투자자의 기대에 대응하는 포인트에 따라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발표하였고,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표 2> 일본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작성 평가 기준¹¹⁾

구분	내용
현황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의 관점에서 자본비용 파악 • 투자자 관점을 토대로 다면적 분석 평가 • 투자자 시점에서 효율적인 경영자산 배분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점검(재무상태표 점검)
계획수립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위한 대책 마련 • 자본비용 감축에 대한 인식 제고 • 중장기 기업가치 향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임원 보상체계 설계 • 중장기 목표와 실현방안 설명
투자자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진과 이사회에 적극적인 관여 • 주주와 투자자의 성격에 따라 다른 대응 접근법 실시 • 대화 현황을 공개하여 더 적극적인 대화와 주주관여 활동 유도

- 국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상기 일본 밸류업 우수 사례집에서 제시한 바와 투자자의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표와 실현방안을 수립하며, 이를 토대로 경영진 및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투자자와 대화를 추진한다면 일본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됨

11) 도쿄증권거래소, 「투자자의 시점에 기초한 자본비용이나 주가를 의식한 경영 포인트와 사례」, 2024.02.01

V. FAQ 2

감사위원회의 내부신고제도 감독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Q. 부정의 발생을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정조사 및 감독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내부신고촉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외부감사법에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시하고 있는 중장기 근본처방으로는 내부신고 활성화, 회계부정 포상제도 확대 및 익명신고 허용과 감사위원회 책임 강화 등이 있음¹⁾
- 내부신고자의 보호는 해당 기업 전체의 신뢰성과 명성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이며,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신분적 안정성 등이 보장되도록 감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계부정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의해 부정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²⁾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직원들이 재무보고나 기타 문제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관해, 불이익 처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방식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신고에 대한 균형 잡히고 독립적인 조사와 적절한 후속 조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³⁾
- 감사위원회는 신고 또는 제보된 사례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철저하게 조사하는 절차를 갖추어야 함⁴⁾
 - 회사의 회계 관련 부정 등을 신고 또는 고지 받은 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함
 - 회사는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됨
- 내부신고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나 내부감사부서와 협력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함
 - 내부신고제도 시스템을 개선할 기회가 있는지 여부
 - 내부신고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

1) 금융위원회, 「회계개혁 평가 개선추진단 1차 회의 개최」, 2022.09.05

2) 금융위원회,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2023.10.25

3)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7호 다목

4)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V. FAQ 2

감사위원회의 내부신고제도 감독

- 효과적인 부정조사 및 감독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구분	내용
부정방지 프로그램 및 내부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행위방지 프로그램 마련 • 경영진에게 내부신고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 요구
내부통제 변화 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가 원격 혹은 하이브리드 근무환경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경영진에게 지속적인 질문 필요

- 내부신고 촉진을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신고 관련 평가테스트 감사 방법에 대한 이해도 확인 • 내부신고 프로세스 및 통제를 통해 신고의 기밀성, 정확성, 적시성이 확보되는지 확인 • 내부신고 프로세스가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평가 및 벤치마킹 되는지 확인 • 신고 접수 건이 경영진을 통하지 않고, 내부감사부서로 바로 전달되는지 확인을 위해 무결성 테스트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 또는 내부감사부서를 통해 재무보고 부정 혹은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테스트 신고를 하여 신고시스템에 익명으로 보고되었는지 확인 • 내부신고된 부정혐의 및 기타위반 내용을 기반으로 경영진의 의지(Tone at the top) 강화 필요성 확인 • 내부신고 관련 전사적인 정기 교육 및 커뮤니케이션 마련 여부 확인

5) 딜로이트 글로벌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Audit Committee Guide」, 2022

VI. 주요 행사

2024 Boardroom Skills Enhancement Program (이사회·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

※ 신청인원이 정원에 도달하여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다시보기 영상은 추후 홈페이지 업로드 예정이며,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올해 하반기 웨비나에서 뵙기를 희망합니다.

세미나 개요

- **대상** 국내 상장법인 사외이사 · 감사위원 · 감사
- **일시**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10:00 ~ 15:00
- **장소**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 아잘레아스 (7F)
- **문의** krccg@deloitte.com

*교육확인서 발급 및 KICPA CPD 등록 가능



프로그램 세부정보

교육 프로그램

- **Agenda** 2024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인지해야 할 국내외 환경 변화 및 당면 과제

Opening 10:00 ~ 11:00	Opening Remarks	홍종성 총괄대표
	참석자 인사	사회자
	Keynote Speech	김한석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Break Time		
Session 11:00 ~ 15:00	I. 내부통제 최신 동향 및 시사점	
	1-1 자금 관련 부정위험 대응 내부통제 공시 강화에 따른 지배기구의 점검포인트	정현 내부회계관리제도 TF 파트너
	1-2 자금사고 방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연결 기반 진단과 맞춤형 솔루션	이승영 자산개발 및 데이터분석 그룹 수석위원
	오찬	
	II.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과 의무 -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중심으로	장정애 동 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Break Time		
	III. Digital Transformation - 이사회가 주목해야 할 AI·빅데이터의 최신 동향과 기업 거버넌스 역할	이성호 컨설팅부문(AI&DATA) 상무
Closing 15:00	Closing Remarks	장수재 회계감사부문 대표

* Q&A는 각 세션에 포함됩니다.

** 본 프로그램의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



박재환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유승원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